
신축 매입임대주택 설계 가이드라인

2026. 09.



한국토지주택공사

< 목 차 >

신축 매입임대주택 설계 가이드라인

- 붙임1. 매입임대주택 단계별 제출서류 목록**
- 붙임2. 화재방지방안에 대한 자재선정·시공에 대한 계획서(확인서)**
- 붙임3. 신축 매입임대주택 마감재기준**
- 붙임4.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 붙임5.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진압 계획**
- 붙임6. 피트니스센터 요구면적 및 운동기구 배치기준**
- 붙임7. 공용세탁실 설계 예시**
- 붙임8. 자료실 게시 참고자료 1식**

신축 매입임대주택 설계 가이드라인

-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최소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별 매입여건 및 공사원가 등을 감안해 LH 요구에 따라 일부 설계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가이드라인에 없는 사항이라도 설계협의 단계에서 LH가 반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사업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설계 가이드라인의 일부로서 세부 설계기준 참고 및 단계별 제출서류 확인 등에 활용할 업무자료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적용 바랍니다.
※ (다운방법) LH 청약플러스>임대주택>알려드려요>자료실 (검색어:매입약정)

<자료실 게시 참고자료 목록>

1. LH 표준상세도
2. LH 매입임대주택 제안평면
3. LH 매입임대주택 실내디자인 가이드라인
4. LH 매입임대주택 공급유형별 조명 설계가이드라인
5. LH 매입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 설계 및 실내디자인 가이드라인

□ 개요

- (적용범위) 민간 매입약정 주택 및 공공리모델링 주택
- (구성) 설계 가이드라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LH 표준상세도

□ 활용방안

- (설계기준)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설계 및 디자인 계획 시 반영
 - 매입약정 체결 전 '설계 가이드라인 공통 및 계획/중간 단계 확인사항' 적용여부 확인
 - 매입약정 체결 후 인허가 시에는 인허가 전 도면협의 및 가이드라인 적용여부 추가 확인
 - 착공 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 가이드라인 공통 및 실시단계 확인사항' 적용여부 확인

< 매입약정 단계별 설계 가이드라인 적용 >

* 현장여건 및 지역본부에 따라 단계별 확인사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외 추가확인도 가능

설계-시공	매도	매입	설계	약정	설계	
-------	----	----	----	----	----	--

□ 신축 매입임대주택 설계 가이드라인 (사업자 셀프 체크리스트)

- 대지위치 :

- 층수(지상/지하) :
- 건축물 용도 :

- 세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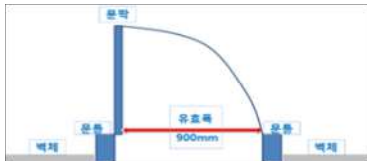
365

연번	단계	분야	부위	공간,공정	부위,자재	확인사항	적용여부	관련도면
1	공통	일반				■ 관련법령, 지자체 조례,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른 법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가이드 라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공통	일반				■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되 부지협소 등 현장여건, 지자체의 인허가 조건, 건축관련 법령개정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민간사업자와 LH가 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3	공통	일반				■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LH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첨부된 LH 표준상세도를 참고한다.		
4	공통	일반				■ 사업자는 설계 시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매입약정 각 단계별 설계 가이드라인 확인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결과와 상이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전 무단으로 착공하는 경우 매입약정 해제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5	공통	일반				■ 세대별 전용면적은 85㎡ 이하로 설계한다.(원룸형의 경우 36㎡ 이하)		
6	공통	일반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위세대별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고,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 등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통	건축			주거약자 편의시설	■ 고령자 주택(장애인 공급주택 포함)은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반영하고, 승강기를 계획한다. [붙임4.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8	공통	건축	전용부		바닥완충재	■ 바닥구조는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2등급 이상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성능기준은 법적기준 적용)		
9	공통	건축	전용부		마감재	■ 6층 이상 건축물은 내단열을 권장한다.		
10	공통	건축	전용부		마감재	■ 단위세대 및 부대시설의 마감재 품질수준은 "붙임3. 신축 매입임대주택 마감재 기준"에 따르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은 자료실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실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자료실 업로드-3. 매입임대주택 실내디자인 가이드라인]		
11	공통	건축	전용부		마감재	■ 주요 마감자재 및 빌트인 가전·가구 관련하여 매입약정 체결 시 "주요 마감자재 적용표(설계 가이드라인_붙임3)"를 제출하고, 2단계 약정이행점검 시에는 "주요 마감자재 제안서(시공 가이드라인_붙임1)"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통	건축	전용부		가전, 가구	■ 빌트인 가구 설계 시 디자인을 고려하여 통합 빌트인 설계를 권장한다. (ex.①불박이장-전자레인지-책상 등 일체형 수납가구, ②책상-책꽂이, ③냉장고-상부수납)		
13	공통	건축	전용부		가전, 가구	■ 2단계 약정이행점검 전 빌트인 스펙(규격, 제조사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시중에 해당등급의 제품이 없는 경우 동등 성능의 제품으로 대체 협의가능(세부사항 협의조정)		
14	공통	건축	공용부			■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벽체, 보 하부·측면등 포함)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로 사용하여야 한다.		
15	공통	건축	공용부		승강기	■ 4층 이상(필로티 포함)이거나 고령자를 대상(층수 관계없이)으로 하는 건축물은 엘리베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미설치시 매입제외)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권장하며 장애인 주차구획 계획 대상 주택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필수 설치한다. [붙임4.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참고]		
16	공통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 주차구역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주차장 내부 감시를 위한 영상 정보 처리기기 및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17	공통	구조				■ LH(외부전문가 포함)가 건축물의 설계 및 구조안전 검토를 실시하며, 민간사업자는 검토 결과를 착공 전까지 반영하여 설계를 수정·보완 후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	단계	분야	부위	공간,공정	부위,자재	확인사항	적용여부	관련도면
18	공통	구조				■ 건축물에 특수전단벽 설계는 불허하며, 사업자는 1단계 약정이행점검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건축구조기술사 확인)를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통	구조				■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은 비구조요소(마감 석재 프레임 등)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구조검토 후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0	공통	구조				■ 건물 기초설계는 지반조사·동결심도를 고려하여 설계하며 도면에 관련내용을 기재한다. - 지반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GL, BL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단차부위 포함), 기초의 구체적인 형식, 깊이 등이 표기되어야 함		
21	공통	구조				■ 지반조사 결과를 기초설계에 반영하고, 1단계 약정이행점검 시 지반조사(보링시험 등)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추공 간격은 30m 내외, 최소 2개소 이상)		
22	공통	구조				■ 건물 기초설계 시 동결심도 고려하여 기초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3	공통	구조				■ 지하수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수공법을 반영하고, 집수정 및 배수펌프(예비포함 2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4	공통	구조				■ 콘크리트 내벽(간막이벽)두께는 100mm(단배근적용) 이상, 외벽두께는 200mm(복배근적용) 이상으로 한다.(단, 내벽이 내력벽인 경우 150mm(복배근적용) 이상)		
25	공통	기계				■ 소방시설물의 설계 및 세부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소방관련법 및 소방시설물별 「화재안전기준(NFPC, NFTC)」을 준수하여야 한다.		
26	공통	기계	전용부	배관일반		■ 동시 사용율(30%)을 고려하여 세대 적정 수압 0.25Mpa(2.5kg/cm²)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적정 수압 미확보시 기계실 및 급수가압펌프 설치(방진가대 포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7	공통	기계	전용부	냉·난방		■ 세대 보일러 및 냉방시설은 세대별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세대 보일러, 냉방시설, 세탁기 등은 동일 공간 배치 시 유지보수, 화재안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간을 계획한다.		
28	공통	기계	전용부		전열교환기(스마트환기시스템)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또는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전열교환기(스마트환기시스템) 설치를 위한 외부 환기구를 계획하여야 한다.		
29	공통	전기·정보통신		기구		■ (배선)접지·전선 등 KEC 규격 준용한다.		
30	공통	전기·정보통신		기구		■ (조명)「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한 LED로 설치한다.		
31	공통	전기·정보통신	전용부	조명		■ 단위세대 조명은 매립을 원칙으로 하되, 거실·침실등/식탁등/발코니등의 경우 노출설치 가능하며, 디자인 등 세부사항은 LH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2	계획/중간	건축	공용부	단지배치		■ 당해 대지의 원활한 우수처리 및 건축물 내부로의 우수유입 방지를 위하여 주변 도로 및 인접대지 레벨을 고려하여 당해 대지 G.L 및 건축물 1층 바닥 F.L을 계획하고 관련도면(배치도, 주차계획도 등)에 명기한다. - 장애인 등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행동선을 계획한다.		
33	계획/중간	건축	공용부	단지배치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에 의거 해당 지역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지하층 및 1층 출입구에 자동 물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계획/중간	건축	공용부	단지배치		■ 세대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다음 기준을 반영토록 한다. - 대지 내에 2개동 이상을 계획하거나 인접한 대지의 건축물과 마주보게 계획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상호간의 거실 또는 침실이 마주보는 배치를 지양한다. - 1층 세대 계획을 지양하되, 불가피할 경우 세대 전면녹지 등 완충공간 또는 차폐시설을 계획한다.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5	계획/중간	건축	공용부	단지배치	옹벽	■ 단지에 옹벽이 있거나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채광, 조망, 통풍 등 주거성능 확보와 옹벽의 구조안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급적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 지양한다. - 다만, 대지가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산사태위험지도 상 위험도 1~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을 준용하여 옹벽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36	계획/중간	건축	공용부	단지배치		■ 부지 경계부 담장, 웬스 설치 등으로 인접대지와와의 경계 계획을 수립한다.		

연번	단계	분야	부위	공간,공정	부위,자재	확인사항	적용여부	관련도면
37	계획/ 중간	건축	공용부	단지배치		도로여건, 정차공간 등을 고려하여 이삿짐 차량 및 소방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한다.		
38	계획/ 중간	건축	공용부	단지배치		- 주차구획 설계시 원활한 차량 출입 및 승하차시 출입문 개폐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 건축물 출입구로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보차분리 등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행동선을 계획한다.		
39	계획/ 중간	건축	공용부	복도	창호	- 공용공간은 환기와 채광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중복도의 길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복도 양끝 등에 1개 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하고, 4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환기창은 사용 시 추락위험이 없도록 개폐방식, 개폐각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0	계획/ 중간	건축	공용부	복도	창호	복도형의 경우 결로 저감 및 우수침입 방지 등을 위해 복도창호를 설치한다.		
41	계획/ 중간	건축	공용부	복도		- 편복도 유효폭은 1,200mm이상, 중복도(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폭은 1,800mm 이상으로 한다. * (유효폭) 우수선홈통 및 벽체 안전손잡이(주거약자용주택 등) 폭을 제외한 순수 통과가능 폭		
42	계획/ 중간	건축	공용부		창호	소방관 진입창은 공용부 설치를 권장하며, 안전난간 높이 확보를 위해 실내 바닥면에서 창틀 제외한 창호까지 높이를 1,200mm로 계획한다.		
43	계획/ 중간	건축	공용부	출입구		주거용(오피스텔 포함)과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용 이외 다른 용도(주민공동시설 제외)를 동일 건축물에 복합하여 계획하는 경우 출입구, 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거용과 분리된 구조로 계획한다.		
44	계획/ 중간	건축	공용부	출입구	창호	동 출입문은 자동문(유효폭 900mm, 유효높이 2,200mm 이상)으로 계획하고 전자출입시스템을 적용한다.		
45	계획/ 중간	건축	공용부	출입구	캐노피	- 출입구는 우수유입 방지를 고려하고, 상부에 창(또는 개구부)이 있는 경우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캐노피를 설치한다. - 보행통로 및 주차공간 상부로 보일러 연통, 환기구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계획한다.(겨울철 응축수로 인한 고드를 피해 예방) - 부득이할 경우, 응축수 배출 및 고드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46	계획/ 중간	건축	공용부	계단		- 계단의 유효폭은 1,200mm(옥외계단은 900mm) 이상 확보하고, 단너비는 260mm이상, 단높이는 180mm 이하로 설계한다. - 옥외계단은 지붕을 설치하고, 우수처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47	계획/ 중간	건축	공용부	계단		사선돌음계단을 금지하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0.3m 이상의 폭이 뿔려 있는 ㄱ자형 계단실은 지양하고, 계획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 대책을 수립한다.		
48	계획/ 중간	건축	공용부	계단		계단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세대 현관문 등의 이격거리와 개폐 방향을 고려한다.		
49	계획/ 중간	건축	공용부	지붕 및 옥 탑	휴게시설	옥상 휴게시설은 지역여건(경관 감상이 쉽고, 개방감이 확보된 곳)에 따라 파고라, 의자, 평상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50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평면계획	창호	- 전용공간은 일조·채광 및 환기가 양호하도록 가급적 남향 위주의 계획을 권장하며, 거실 및 침실 등 사람이 머무르는 공간에는 적정 크기의 창을 설치한다. - 사선제한 등에 따른 다락 등 평면과 단면상의 경사 및 사선형 계획은 지양한다.		

연번	단계	분야	부위	공간,공정	부위,자재	확인사항	적용여부	관련도면																																																									
51	계획/중간	건축	전용부	평면계획		■ 단위세대는 아래 최소 계획기준 준수하고, 세대타입은 최소화로 계획하여야 한다. <table><thead><tr><th rowspan="2">전용면적</th><th rowspan="2">베이수</th><th rowspan="2">욕실수</th><th colspan="3">실별 안목 최소 치수</th><th rowspan="2">주방가구</th><th rowspan="2">신발장</th></tr><tr><th>거실(폭)</th><th>주침실</th><th>일반침실</th></tr></thead><tbody><tr><td>26㎡이하</td><td>1</td><td>1</td><td colspan="3">3.6m</td><td>1.8m</td><td>0.7m</td></tr><tr><td>26㎡초과~36㎡이하</td><td>1</td><td>1</td><td colspan="3">3.6m</td><td>1.8m</td><td>0.7m</td></tr><tr><td>36㎡초과~46㎡이하</td><td>2</td><td>1</td><td>3.0m</td><td>3.0×2.7m</td><td>(2.7×2.7m)</td><td>2.4m</td><td>0.9m</td></tr><tr><td>46㎡초과~55㎡이하</td><td>2</td><td>1</td><td>3.3m</td><td>3.0×3.0m</td><td rowspan="3">2.7×2.7m</td><td>3.0m</td><td>1.0m</td></tr><tr><td>55㎡초과~65㎡이하</td><td>3</td><td>2</td><td>3.6m</td><td>3.3×3.0m</td><td>3.3m</td><td>1.2m</td></tr><tr><td>65㎡초과~85㎡이하</td><td>3</td><td>2</td><td>3.9m</td><td>3.6×3.0m</td><td>3.9m</td><td>1.4m</td></tr></tbody></table> * ()는 권장사항 <전용 36㎡ 타입 예시> <전용 55㎡ 타입 예시>	전용면적	베이수	욕실수	실별 안목 최소 치수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폭)	주침실	일반침실	26㎡이하	1	1	3.6m			1.8m	0.7m	26㎡초과~36㎡이하	1	1	3.6m			1.8m	0.7m	36㎡초과~46㎡이하	2	1	3.0m	3.0×2.7m	(2.7×2.7m)	2.4m	0.9m	46㎡초과~55㎡이하	2	1	3.3m	3.0×3.0m	2.7×2.7m	3.0m	1.0m	55㎡초과~65㎡이하	3	2	3.6m	3.3×3.0m	3.3m	1.2m	65㎡초과~85㎡이하	3	2	3.9m	3.6×3.0m	3.9m	1.4m		
전용면적	베이수	욕실수	실별 안목 최소 치수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폭)	주침실	일반침실																																																												
26㎡이하	1	1	3.6m			1.8m	0.7m																																																										
26㎡초과~36㎡이하	1	1	3.6m			1.8m	0.7m																																																										
36㎡초과~46㎡이하	2	1	3.0m	3.0×2.7m	(2.7×2.7m)	2.4m	0.9m																																																										
46㎡초과~55㎡이하	2	1	3.3m	3.0×3.0m	2.7×2.7m	3.0m	1.0m																																																										
55㎡초과~65㎡이하	3	2	3.6m	3.3×3.0m		3.3m	1.2m																																																										
65㎡초과~85㎡이하	3	2	3.9m	3.6×3.0m		3.9m	1.4m																																																										
52	계획/중간	건축	전용부	평면계획		■ 실별 안목 최소 치수는 10% 범위 내에서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다.																																																											
53	계획/중간	건축	전용부	평면계획		■ 인접세대 및 공용부와 연결된 베란다, 테라스 등은 프라이버시 확보, 방범, 보안등을 고려하여 2m 이상 높이의 벽체 등으로 구획한다.																																																											
54	계획/중간	건축	전용부	평면계획		■ 외부로부터 세대 각 부분으로의 이사짐, 가전, 가구 등의 원활한 운반이 가능하도록 E/V나 외부창호 규격, 공용복도 및 단위세대의 복도 폭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55	계획/중간	건축	전용부	평면계획		■ 현관으로부터 각 실로 통하는 실내 복도 유효폭은 1,000mm 이상으로 계획한다.																																																											
56	계획/중간	건축	전용부	평면계획		■ 세대 외벽에는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여야 하며 오피스텔은 노대(발코니)설치를 권장한다.																																																											
57	계획/중간	건축	전용부	평면계획		■ 노대(발코니)에는 외부창호를 설치하되, 2베이 이상 주택의 발코니 계획시 실내 공간 활용성 향상을 위하여 빨래건조 등 습식공간을 제외한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계획한다.																																																											
58	계획/중간	건축	전용부	평면계획	승강기	■ 승강기 계획시 세대 거실 또는 침실과 인접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소음전달 방지를 위해 이중벽 설치 등 소음·진동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9	계획/중간	건축	전용부	평면계획	주방가구	■ '주방가구 최소길이'는 냉장고장을 제외한 주방가구* 하부장 전면길이를 10% 범위 내에서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키큰장이나 하부장만 있는 구간 및 상판 하부 빌트인 가전 설치구간도 길이 산정 포함																																																											
60	계획/중간	건축	전용부	평면계획	신발장	■ '신발장 최소폭'은 신발장 몸체의 가로길이를, 복수의 신발장 설치 시 합산하여 적용하며 신발장 대신 현관창고 설계 시 현관창고 선반의 전면길이를 신발장 폭으로 본다.																																																											
61	계획/중간	건축	전용부	평면계획	가전, 가구	■ 평면도 작성시 식탁, 침대, 쇼파, 붙박이장, 냉장고장 및 TV, 빌트인 가구·가전 등 평형별 주요 가구(가전) 배치가능 여부 및 공간 활용성 검토를 위해 아래 규격*을 참고하여 실선* 및 점선*으로 표시하고 창호의 종류(WD, PL 등)와 치수(W×H)를 기입하여야 한다. * 공사내역 포함가구는 실선, 입주자 개별설치 가구는 점선으로 표시 < 평형별 필수 가구 최소 규격 예시> <table><thead><tr><th>전용면적</th><th>식탁</th><th>침대</th><th>쇼파</th><th>책상(폭)</th><th>붙박이장</th><th>냉장고장</th></tr></thead><tbody><tr><td>26㎡</td><td>-</td><td rowspan="2">1.0×2.0m</td><td>-</td><td rowspan="2">1.0m (빌트인 외)</td><td rowspan="2">0.7×0.6m</td><td rowspan="2">0.7×0.7m (빌트인 외)</td></tr><tr><td>36㎡</td><td>0.7×0.7m</td><td>0.8m</td></tr><tr><td>46㎡</td><td rowspan="2">1.2×0.7m</td><td>(주침실) 1.5×2.0m</td><td>1.4m</td><td>1.0m</td><td>1.0×0.6m</td><td rowspan="2">1.0×0.7m</td></tr><tr><td>65㎡</td><td>(일반침실) 1.0×2.0m</td><td>1.8m</td><td>1.2m</td><td rowspan="2">1.2×0.6m</td></tr><tr><td>85㎡</td><td>1.4×0.7m</td><td></td><td>2.6m</td><td>1.4m</td><td></td><td>1.0×0.7m (2개)</td></tr></tbody></table>	전용면적	식탁	침대	쇼파	책상(폭)	붙박이장	냉장고장	26㎡	-	1.0×2.0m	-	1.0m (빌트인 외)	0.7×0.6m	0.7×0.7m (빌트인 외)	36㎡	0.7×0.7m	0.8m	46㎡	1.2×0.7m	(주침실) 1.5×2.0m	1.4m	1.0m	1.0×0.6m	1.0×0.7m	65㎡	(일반침실) 1.0×2.0m	1.8m	1.2m	1.2×0.6m	85㎡	1.4×0.7m		2.6m	1.4m		1.0×0.7m (2개)																							
전용면적	식탁	침대	쇼파	책상(폭)	붙박이장	냉장고장																																																											
26㎡	-	1.0×2.0m	-	1.0m (빌트인 외)	0.7×0.6m	0.7×0.7m (빌트인 외)																																																											
36㎡	0.7×0.7m		0.8m																																																														
46㎡	1.2×0.7m	(주침실) 1.5×2.0m	1.4m	1.0m	1.0×0.6m	1.0×0.7m																																																											
65㎡		(일반침실) 1.0×2.0m	1.8m	1.2m	1.2×0.6m																																																												
85㎡	1.4×0.7m		2.6m	1.4m			1.0×0.7m (2개)																																																										

연번	단계	분야	부위	공간,공정	부위,자재	확인사항	적용여부	관련도면																																																							
62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평면계획	가전, 가구	■ 입주유형에 따라 빌트인 가전·가구를 설치한다. <table><tr><th>구분</th><th>냉장고</th><th>세탁기</th><th>에어컨</th><th>전자레인지</th><th>책상</th><th>의자</th><th>불박이장</th></tr><tr><td rowspan="3">필수 여부</td><td>청년</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고령자</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신혼, 다자녀</td><td>사업자 제안</td><td>사업자 제안</td><td>사업자 제안</td><td>사업자 제안</td><td>사업자 제안</td><td>사업자 제안</td></tr><tr><td rowspan="3">제품 사양</td><td>규격</td><td>250L 이하</td><td>15kg 이하</td><td>2.3kW 이상</td><td>23L 이하</td><td>1인용</td><td>1인용</td><td>-</td></tr><tr><td>기능</td><td>냉동, 냉장</td><td>세탁, 탈수</td><td>냉방</td><td>자동요리</td><td>책꽂이 일체형</td><td>철이식</td><td>옷장</td></tr><tr><td>에너지효율</td><td>2등급 ↑</td><td>2등급 ↑</td><td>2등급 ↑</td><td>-</td><td>-</td><td>-</td><td>-</td></tr></table>	구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책상	의자	불박이장	필수 여부	청년	○	○	○	○	○	○	고령자	○	○	○	○	-	○	신혼, 다자녀	사업자 제안	사업자 제안	사업자 제안	사업자 제안	사업자 제안	사업자 제안	제품 사양	규격	250L 이하	15kg 이하	2.3kW 이상	23L 이하	1인용	1인용	-	기능	냉동, 냉장	세탁, 탈수	냉방	자동요리	책꽂이 일체형	철이식	옷장	에너지효율	2등급 ↑	2등급 ↑	2등급 ↑	-	-	-	-		
구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책상	의자	불박이장																																																								
필수 여부	청년	○	○	○	○	○	○																																																								
	고령자	○	○	○	○	-	○																																																								
	신혼, 다자녀	사업자 제안	사업자 제안	사업자 제안	사업자 제안	사업자 제안	사업자 제안																																																								
제품 사양	규격	250L 이하	15kg 이하	2.3kW 이상	23L 이하	1인용	1인용	-																																																							
	기능	냉동, 냉장	세탁, 탈수	냉방	자동요리	책꽂이 일체형	철이식	옷장																																																							
	에너지효율	2등급 ↑	2등급 ↑	2등급 ↑	-	-	-	-																																																							
63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평면계획	가전, 가구	■ 전기쿠팡은 쏘세대 설치하며 불박이장 규격은 평형별로 맞춤형으로 적용																																																									
64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평면계획	가전, 가구	■ 청년·고령자 주택(평형 무관)의 거실 및 주침실에는 냉방용량을 고려하여 에어컨을 설치한다.																																																									
65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평면계획	가전, 가구	■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주택은 거실 및 주침실에 냉매배관 및 냉매박스를 설치한다. (응축수 드레인 계획 수립)																																																									
66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현관	일반	■ 현관문 전면에 벽체 등이 있는 경우 E/V 홀 및 복도에서 가구(장롱) 반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현관과 벽체간의 유효거리는 1,400mm 이상을 확보한다.																																																									
67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현관	일반	■ 현관 깊이(현관문에서 마루귀틀까지 거리)는 최소 1,000mm를 확보한다.																																																									
68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현관	일반	■ 인터폰 설치(외부)를 위해 현관 옆 300mm 이상의 벽체 유효길이를 확보한다.																																																									
69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현관	일반	■ 거실과 세대현관 바닥마감 단차를 30mm 이상으로 계획한다. 다만, 주거약자용 주택은 30mm 이하로 계획한다. - 모든 층의 거실과 세대현관 바닥마감 단차는 동일하게 계획한다.																																																									
70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현관	창호	■ 현관문 규격은 이사짐 출입 및 결로방지 성능 등을 고려하여 호칭치수 너비(W) 1,100mm×높이(H) 2,200mm 이상으로, 유효폭 900mm 이상을 확보한다. 																																																									
71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현관	창호	■ 현관문과 엘리베이터 문이 마주보는 구조를 지양하고, 현관문 배치를 엇갈리게 하여 현관문 개폐에 간섭이 없도록 해야한다.																																																									
72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현관	창호	■ 현관문 개폐 시 가스계량기 및 우수관 등과 간섭이 없도록 하여 피난방향으로 최소 90도 이상 열리는 구조로 계획한다.																																																									
73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현관	신발장	■ 신발장 깊이는 문짝 포함 400mm 이상, 문짝너비는 350~600mm(350~450mm 권장)하되 3Door : 1,050 ~1,350mm, 4Door : 1,400~1,800mm으로 한다. - 우산꽂이 세대당 1개소 설치(측판부착 또는 문짝부착 등) - 신발장 내에 서랍을 설치하여 수납성 제고 (LH 건축 표준상세도 DA-90-100 참고)																																																									
74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거실, 침실	천장	■ 층고는 2,800mm, 천장고(반자높이)는 2,300mm으로 계획한다. 다만, 층고 및 천장고 높이 상황이 필요한 경우에는 LH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5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거실, 침실	창호	■ 외기에 면한 벽체 창호의 위치 및 규격(W×H) 은 일조·채광 확보 및 침대, 책상 등 가구와의 간섭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76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거실, 침실	창호	■ 침실문 폭은 호칭치수 900mm 이상으로 한다.																																																									
77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거실, 침실	불박이장	■ 불박이장 깊이는 문짝 포함 600mm 이상, 문짝너비는 350~600mm(350~450mm 권장)하되, 3Door : 1,050 ~1,350mm, 4Door : 1,400~1,800mm으로 한다. - 불박이장 내 서랍을 설치하여 수납성 제고 (LH 건축 표준상세도 DA-90-300 참고)																																																									
78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거실, 침실	화장대	■ 좌식 화장대는 폭(W) 800mm 이상, 입식은 폭(W) 400mm 이상을 권장한다. (LH 건축 표준상세도 DA-90-500 참고)																																																									

연번	단계	분야	부위	공간,공정	부위,자재	확인사항	적용여부	관련도면
79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주방	주방가구	■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및 냉장고장(전용 60㎡ 이상)는 필수 설치하고 키 큰 장, 아일랜드장 등은 선택 적용한다. * 전용 60㎡ 미만은 냉장고장 설치를 권장하되 미설치시 냉장고 설치공간 필수 확보		
80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주방	주방가구	■ 전용 60㎡ 이상 평형의 주방가구 설계시 일반 및 김치냉장고 설치를 위해 냉장고장 2개 계획을 권장한다. - 냉장고장 미설치 시에는 냉장고 2개 설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81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주방	주방가구	■ 조리작업 동선을 고려하여 냉장고(장)→개수대→조리대→가열대 순으로 계획을 권장하고, 개수대가 설치된 하부장 면에 뒷선반을 설치한다(가열대 제외)		
82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주방	창호	■ 환기 등을 위해 외기 또는 발코니와 면하는 벽체에 창호를 설치하되, 가열대 전면부 창호 설치는 금지한다.		
83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욕실	일반	■ 양변기, 세면기 및 샤워공간(또는 욕조) 설치가 가능하고 출입문 개폐 시 욕실 내부의 도기류 등과의 간섭이 없도록 안목치수 기준 1.5×2.2m 이상으로 설계한다.(PD공간 포함)		
84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욕실	일반	■ 평형별 욕실 개수에 따라 욕실 2개 설계 주택은 욕실에 각각 욕조 및 샤워공간을 계획, 욕실 1개 설계 주택은 샤워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85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욕실	샤워부스	■ 샤워공간은 안목치수 기준 0.9m×0.9m 이상 공간을 확보하고 물 튀김 방지를 위해 샤워부스(1Bath는 샤워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샤워칸막이, 샤워부스 출입문을 포함한 샤워공간에 설치되는 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LH 건축 표준상세도 DA-92-015 참고)		
86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욕실	창호	■ 출입문 규격은 호칭치수 기준 750mm 이상으로 하며 개폐 시 욕실 내부 도기류 등과 간섭이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87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발코니	일반	■ 발코니(보일러실 등)의 최소 유효 깊이는 세탁기, 우수흡통 설치 공간 확보 등을 고려하여 1,000mm 이상으로 계획한다.		
88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발코니	일반	■ 세탁실은 가급적 발코니에 계획하고, 세탁기 설치패드 규격은 800×1,000(H=45mm) 이상 확보하고, 세탁기 발코니 출입문, 드럼세탁기 문 개폐 및 입주민 작업동선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획한다. *세탁기 후면 보일러 설치 시 800×1300 이상으로 한다.(깊이 300 추가확보)		
89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발코니	창호	■ 세탁실 출입 창호는 문짝이 부착된 상태에서 세탁기 반입이 가능하도록 폭 900mm이상(유효폭 710mm 이상 확보)으로 계획한다.		
90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실외기실	일반	■ 실외기실 가로방향 유효폭은 실외기 크기를 고려하여 1,200mm 이상으로 계획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실외기실 크기 축소 등 조정이 가능하다.		
91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실외기실	일반	■ 단위세대 실외기 계획 시, 각 세대 별로 설치하거나 복수 세대의 실외기실을 통합할 경우는 당해 층 공용부에서 출입가능한 곳에 실외기 공간을 확보하고, 응축수 처리를 위한 배수드레인 등을 설치한다.		
92	계획/ 중간	건축	전용부	AD/PD	일반	■ 세대 내에 욕실 및 다용도실 등은 PD(Pipe Duct)공간을, 주방은 PD(Pipe Duct)공간 및 AD(AirDuct)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당해층 배기 계획 시 AD 설치 제외하고 별도 구획되어 있는 보일러실 및 발코니 등의 배관은 PD공간 없이 설치할 수 있다.)		
93	계획/ 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민공동시 설		■ 커뮤니티시설은 매입 공고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입주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시설(내부 비품설치 등)을 계획한다.		
94	계획/ 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민공동시 설		■ 커뮤니티시설은 지상 1층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규모, 입주대상자 유형을 감안하여 협의를 거쳐 1층 외 계획도 가능하다.(내부 설치비품 협의) - 세대 상부에 커뮤니티시설 배치 시 층간소음 방지대책을 계획한다.		
95	계획/ 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민공동시 설		■ 커뮤니티시설 내부 및 이용시설 확인이 가능하도록 투명창호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개방감을 확보하여야 한다.		
96	계획/ 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민공동시 설		■ 주민공동시설 계획 시 청년층 주택의 피트니스센터, 공용세탁실, 독서실 등 입주 계층별 주거서비스 니즈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 바닥 마감재는 내구성을 고려하고, 특히 공유주방, 공동세탁실 등은 물사용으로 인한 하자를 고려하여 바닥마감재를 계획한다. *[자료실 업로드-4. 매입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 설계 및 실내디자인 가이드라인]		

연번	단계	분야	부위	공간,공정	부위,자재	확인사항	적용여부	관련도면
97	계획/ 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민공동시 설	피트니스센 터	■ 피트니스센터 반영 시 주택규모(호수)에 따라 관리업체 상주여부 및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붙임6. 피트니스센터 요구면적 및 운동기구 배치기준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 고령자 주택의 피트니스센터 운동기구 종류는 변경하여 적용한다.		
98	계획/ 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민공동시 설	공용세탁실	■ 공용세탁실 계획 시 소음 발생을 고려하여 세탁실 측면에는 세대 배치를 지양하고, [붙임7. 공용세탁실 설계 예시]를 준용하여 세탁실 규모 및 세탁기, 건조기 설치대수를 산정하며, 대형 이불빨래가 가능한 용량을 최소 1대 설치한다.		
99	계획/ 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근로자 휴게 시설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150호 이상 오피스텔은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사무소 및 근로자 휴게시설*(바닥면적 6㎡이상, 천장고 2.1m 이상)을 설치한다. 휴게시설은 가급적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해서 설치하기를 권장하며, 공간제약 등으로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녀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참고		
100	계획/ 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전기실		■ 전기실, 기계실 등은 소음·진동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소음 및 진동 발생을 고려하여 세대 인접 및 옥상 배치는 지양한다.		
101	계획/ 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전기실		■ 전기실을 계획하는 경우 장비 반입 및 반출 통로, D.A를 확보하고, 보행자 통로, 주차구역 등과 간섭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발전기실과 인접 배치한다. - 발전기실 흡배기구는 세대에 영향이 없는 장소로 계획하여야 한다.		
102	계획/ 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방재실		■ 방재실을 계획할 경우 화재, 침수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능한 피난층에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 지하1층에 수직 동선과 인접하여 계획할 수 있다.		
103	계획/ 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MDF실		■ MDF실 출입문은 0.9m 이상, 높이 2m 이상(문틀의 외측지수)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침수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수직동선과 인접한 위치에 계획한다.		
104	계획/ 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PIT		■ 건축물 상하부 주거용과 근린생활시설 계획에 따라 구조형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종 배관이 보를 관통하지 않도록 배관 관경, 단열재 두께, 설치공간 등을 고려하여 PIT를 설치하고 설비배관 하부 유효높이를 1.8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105	계획/ 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PIT		■ 건축물 지하에 PIT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비배관 하부 유효높이를 1.8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106	계획/ 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 전체 주차대수, 확장형, 경형, 전기차 등 종류별 주차대수는 관련법령 및 조례 기준 이상으로 계획하되 지하주차장을 권장한다.		
107	계획/ 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 주차장 구조 기본모듈은 주차면 가로방향 3대 이하로 하고, 지하주차장 계획 시 주동 통합형으로 계획한다.		
108	계획/ 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 주차공간의 유효 천장고는 2,100mm 이상, 차량 통로의 유효 천장고는 2,300mm 이상 확보하고, 차량 진출입구에서 인지 가능한 위치에 차량진입 제한높이를 표시한다. (단, 택배차량이나 분리수거 차량의 진입을 고려할 경우 차량 통로 유효 천장고를 2,700mm 이상으로 하고, 소방차량 진입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천장고를 확보한다.)		
109	계획/ 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경사로(램프)는 2차선, 폭 6,000mm 이상 확보하고 진출입 차선을 분리한다.		
110	계획/ 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 주차장 내부 막다른 곳에는 회차공간(2.5×5.0m이상)을 계획하고 주차장 바닥에 '회차' 표시를 한다.		
111	계획/ 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기계식 주차 장	■ 기계식 주차 설치 허용기준(공고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12	계획/ 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기계식 주차 장	■ 기계식 주차장은 엘리베이터방식(승강기 방식), 평면왕복방식, 다층순환방식만 가능하며, 기계식 주차설비까지 명쾌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113	계획/ 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기계식 주차 장	■ 이용자 안전성 향상을 위해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을 적용할 수 있다. * 운전자가 기계식주차장 입구 앞에 있는 별도의 승하차장에 하차 후 기계장치가 차량만 자동으로 기계식주차장 내부 및 주차구획으로 이동하는 기계식주차장		
114	계획/ 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기계식 주차 장 (카리프트)	■ 주거와 같은 동에 기계식주차설비를 계획할 경우 단위세대 벽면과 연접하여 설치 불가하며, 복도, 공용부 배치 및 별개공간으로 완충공간을 구획하고, 소음·진동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카리프트(자동차용 승강기) 계획 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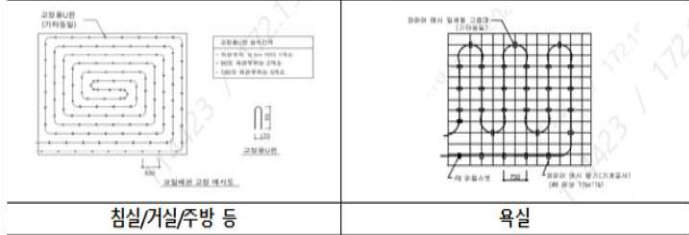
연번	단계	분야	부위	공간,공정	부위,자재	확인사항	적용여부	관련도면
115	계획/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카리프트)	- 기계식 주차타워 윗층에 주거세대 설치를 금지(커뮤니티 공간은 가능)하고, 기계식 주차장의 차량출입은 관리를 고려하여 지하층 진입을 지양한다. - 카리프트(자동차용 승강기) 계획 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116	계획/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기계식 주차관리를 위한 주차관리실을 의무 설치(경비실이 기계식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하여 계획된 경우 검용 가능)하여야 한다.		
117	계획/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카리프트	카리프트(자동차용 승강기) 계획 시 관련법규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되,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정류장)는 반드시 1면이상 계획하여야 한다.		
118	계획/중간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카리프트	카리프트(자동차용 승강기) 계획 시 승강로 높이(O.H)는 최소 4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119	계획/중간	기계	전용부	오배수		발코니 배수관은 동파 방지를 위해 외기에 면하지 않도록 실내측으로 위치를 선정한다.		
120	계획/중간	기계	전용부	배관일반		- 급수 입상관은 PD(세대 내 또는 공용 PD)를 구획하여 설치한다. - 벽체 매립시공 금지		
121	계획/중간	조경	공용부	쓰레기수거 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분리수거 용기 설치공간은 시선차단,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고려하고,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수거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로 지상층에 계획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지하층에 계획할 경우, 수거차량이 접근 가능하도록 해당 동선의 천장고는 2.7m 이상 확보하고, 환기 및 화재 대비 설비(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122	계획/중간	조경	공용부	쓰레기수거 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150세대 당 8㎡ 이상을 권장하고, 근린생활 시설 등 주거시설 외 타용도시설이 있는 경우 주거시설과 구분하여 설치 한다.		
123	계획/중간	조경	공용부	쓰레기수거 시설		내부 적치물이 보행자 및 입주민 시각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하고, 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눈 비를 맞지 않도록 가림시설(지붕 포함)을 설치한다.		
124	계획/중간	조경	공용부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보관소는 통행에 지장이 없고 이용 및 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접근성이 양호한 개방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125	실시	건축	공용부	출입구	우편함	우편함은 동 출입구 로비에 세대수 이상(공용, 반송용, 폐건전지함 포함) 설치하되, 바닥 마감선에서 420mm 이상 띄우고, 높이 1,700mm 이하로 설계한다.		
126	실시	건축	공용부	출입구		주출입구 또는 승강기 내부에 입주민 안내게시판(포켓형, 6구)을 계획한다.		
127	실시	건축	공용부	복도		복도 등 공용부 천장 유효높이는 2,200mm 이상 확보한다.		
128	실시	건축	공용부	계단		계단의 유효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2,100mm 이상 확보한다.		
129	실시	건축	공용부	계단	난간	계단 난간의 높이는 900mm 이상(최상층 계단참은 1,200mm 이상), 간살간격은 100mm 이하로 계획한다.		
130	실시	건축	공용부	지붕 및 옥탑		드레인 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적정 위치에 계획하여 평지붕 구배(1/50~1/150)를 확보한다.		
131	실시	건축	공용부	지붕 및 옥탑		- 평지붕(옥탑, 캐노피 포함), 경사지붕 내부바닥, 경사지붕 발코니상부 등은 시트방수를 적용한다. (LH 건축 표준상세도 DA-09-003, 52-001~004, 53-001~002, 55-005 참고)		
132	실시	건축	공용부	지붕 및 옥탑	캐노피	옥상 출입문 상부에는 캐노피를 설치하고 비상등과 옥상출입문의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133	실시	건축	공용부	지붕 및 옥탑	휴게시설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곳은 표면배수를 위한 기울기를 두어야 한다.		
134	실시	건축	공용부	지붕 및 옥탑		옥상 조경은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과 건축물의 하부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수 및 배수시설(드레인 등)을 설치 한다.		
135	실시	건축	공용부	지붕 및 옥탑		옥상 조경 계획 시,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방근층[방근시트, 복합방근방수시트, 골재배수층(또는 배수판)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36	실시	건축	공용부	지붕 및 옥탑	난간	옥탑(안테나 설치 위치 포함) 및 지붕층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높이 1.2m이상, 세로살 형태의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137	실시	건축	공용부	지붕 및 옥탑	사다리	- 옥탑점검 사다리는 바닥에서 이격(1,040mm 권장)하여 설치하되, 높이 2,000mm 이상의 옥탑 사다리에는 추락방지대와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LH 표준상세도 DA-77-012~015 참고)		

연번	단계	분야	부위	공간,공정	부위,자재	확인사항	적용여부	관련도면
138	실시	건축	공용부	지붕 및 옥 탑	사다리	■ 옥탑 사다리의 발 디딤대 간격은 360mm 이하(높이 2,000mm 이상인 경우 300mm 미만), 등반이 용의 공간치수는 700~800mm를 확보하여야 한다.		
139	실시	건축	공용부	지붕 및 옥 탑	작업용 고리	■ 옥상에는 작업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작업용 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복도형 : 1세대 1개소(전, 후 교차 설치) - 계단실형 : 1세대 2개소 - 1코어 2개소, 측벽 1개소 (LH 건축 표준상세도 DA-77-024~206 참고)		
140	실시	건축	공용부	지붕 및 옥 탑	흡출기	■ 옥상 흡출기 높이 계획 시 원활한 배기를 위해 풍압대를 고려하고, 평지붕 옥상정원에 설치 시 보행자에게 냄새로 인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바닥에서 1.7m 이상 계획한다.		
141	실시	건축	공용부	지붕 및 옥 탑	창호	■ 옥상, E/V 기계실 등 공용부위 그릴창에 알루미늄 재질의 고정용 방충망을 설치한다.		
142	실시	건축	공용부		공용수전	■ 공용공간 청소·관리를 위해 화장실 또는 별도공간에 공용 청소수전을 설치한다. (공용화장실, 경비실화장실 등 동파방지를 위해 건물내부에 설치하며 전기온수기 설치)		
143	실시	건축	전용부			■ 주방가구 상부장 보강상세 및 경량벽체 부위 벽걸이 TV, 벽부형 에어컨 등 중량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를 표시하여야 한다. (LH 건축 표준상세도 DA-25-203~205, DA-29-410 참고)		
144	실시	건축	전용부			■ 주거약자용 주택 등에 안전손잡이 설치 시 고정상세(고정철물 구조체 관입깊이 50mm이상, 석고보드면은 철판 또는 합판보강 등)를 표시하여야 한다. (LH 건축 표준상세도 DA-29-411, DA-61-206 참고)		
145	실시	건축	전용부	현관	거울	■ 현관거울은 신발장 문짝에 부착하거나 신발장 맞은편 벽체 등에 설치한다.(LH 건축 표준상세도 DA-90-141,142 참고)		
146	실시	건축	전용부	현관	마루귀틀	■ 마루귀틀은 현관폭에 맞게 설치하되 깊이는 최소 80mm로 계획한다. (LH 건축 표준상세도 DA-17-105, 106 참고)		
147	실시	건축	전용부	거실, 침실		■ 거실, 침실 등 각 실(室)간 칸막이벽을 건식벽체로 계획하는 경우 단열재 설치 등 소음차단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8	실시	건축	전용부	거실, 침실	단열재	■ 직·간접 외기 및 비난방공간(복도, 발코니, 계단실, 승강로 등) 등과 접한 벽면, 천장, 바닥 등에 열교현상 발생부위를 최소화하여 단열을 계획하고, 열교현상 발생부위에는 300mm 이상의 길이로 결로방지재를 계획한다. (LH 건축 표준상세도 DA-60-000~DA-60-126 참고)		
149	실시	건축	전용부	거실, 침실	단열재	■ 내단열 설계 시 가급적 건식벽체 등을 활용한 통한 외벽 단열재의 연속 계획으로 열교현상 발생 부위를 최소화 한다.		
150	실시	건축	전용부	거실, 침실	창호	■ 외부창호(주방, 발코니 포함)는 착색 바(BAR)를 적용한 PL(플라스틱)창호로 설계한다.		
151	실시	건축	전용부	거실, 침실	창호	■ 세대 내 창호에는 스톱퍼[이중창(상·하 총 8개, 단창 상·하 총 4개)], 레버형[자동잠금형(비확장 발코니 내부창 및 베란다 진입창호는 제외)] 손잡이를 계획하여야 한다.		
152	실시	건축	전용부	거실, 침실	창호	■ 외기에 면한 모든 창(프로젝트창, 그릴창 포함)은 방충망을 설치하고, 1층 및 공용부(복도, 야외 테라스 등)와 접한 세대 창호에는 방범용 방충망을 계획하여야 한다. -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는 복도에 접한 세대 창호에는 불투명 유리를 사용한다.		
153	실시	건축	전용부	거실, 침실	창호	■ 거실에서 보이는 침실문 및 욕실 여닫이문은 문선 및 문 상부판을 설치하되, 문 높이 등으로 상부판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LH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154	실시	건축	전용부	거실, 침실	창호	■ 침실 문짝은 ABS 도어로 하고, 문틀 하부턱(Sill)은 미설치하되, 바닥과 과도한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55	실시	건축	전용부	거실, 침실	창호	■ 문짝 개폐 시 도어록과 벽체, 가구문짝 등과의 충격 완화를 위해 스톱퍼 또는 기타 완충재를 설치한다.		
156	실시	건축	전용부	거실, 침실	창호	■ 최고층수 16층 이상 주택과 30호 이상의 오피스텔은 전 세대 실내 출입문에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157	실시	건축	전용부	주방	주방가구	■ 주방가구 하부 바닥은 내부 수성페인트로 마감한다.		

연번	단계	분야	부위	공간,공정	부위,자재	확인사항	적용여부	관련도면
158	실시	건축	전용부	주방	주방가구	■ 하부장 깊이는 600mm, 높이*는 870mm 이상, 선반 유효깊이 390mm 이상으로 계획하며, 상부장 깊이는 290mm, 높이*는 700mm 이상, 선반 유효깊이 250mm 이상으로 계획한다. * 하부장 높이 : 바닥마감~주방상판 윗선까지, 상부장 높이 : 상부장 몸체높이 (문짝, 휘샤 제외) (상부장 개폐 시 레인지 후드와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		
159	실시	건축	전용부	주방	주방가구	■ 주방가구 폭 800mm 이상시 처짐방지를 위해 중간기둥목을 계획하여야 한다.		
160	실시	건축	전용부	주방	주방가구	■ 가열대와 벽체 이격거리는 타일벽면은 150mm, 가구측판 마감은 300mm 이상으로 한다. (레인지후드 설치 높이(650mm 이상 확보)는 연번 221 참고)		
161	실시	건축	전용부	욕실		■ 바닥마감 기준으로 거실(침실)과 욕실 바닥 단차를 60mm 이상 확보하고, 바닥 구배는 1/100로 계획한다. (샤워공간 바닥마감은 욕실 바닥마감과 10mm 단차이 계획)		
162	실시	건축	전용부	욕실		■ 조적부위 시멘트 액체방수 또는 폴리머계방수(H=1,200mm)를 적용한다. 다만 샤워공간 및 욕조와 접한 벽체의 방수높이는 1,800mm로 적용한다.		
163	실시	건축	전용부	욕실	창호	■ 욕실 출입문틀 및 문짝은 ABS 도어로 하고, 출입문틀 하부씰은 인조대리석(BMC)로 한다.		
164	실시	건축	전용부	욕실, 발코니		■ 욕실 및 발코니 바닥 방수는 시멘트 방수모르타르(또는 폴리머모르타르)로 하되, 드레인 주위 및 벽·바닥 접합부는 우레탄 도막방수(비노출)로 방수보강 하여야 한다.		
165	실시	건축	전용부	발코니	단열재	■ 건물 전체가 내단열인 경우 발코니 벽체 및 천장에 단열재(겔로저감재)를 계획한다. (단, 대피공간, 실외기실 제외) - 벽체(외기 인접 3면 벽체) : THK30(1,2구역) 또는 THK20(3구역) 비드법 발포폴리스티렌(2종2호)+THK4.5 CRC 보드+내부수성페인트 - 천장(전체) : THK15 압출법 발포폴리스티렌(1호)(콘크리트 매립시공)+THK9.5 일반 석고보드+내부수성페인트 (단, 세탁기실 별도 구획 시 발코니 천장 마감은 PVC 천장재 적용하고, 환기를 위한 창호 또는 환풍기(정풍압)을 설치한다.) * 구역 (1,2,3) 구분은 LH 표준상세도 DA-60-101 참고 (LH 건축 표준상세도 DA-60-101~119 참고)		
166	실시	건축	전용부	발코니	환기구	■ 발코니 벽체 원형 ABS 환기구(개폐 기능 포함한 환기구 캡 설치)를 상,하부 각각 1개소 설치한다. (단, 발코니 공간 협소로 상, 하부 각각 설치 곤란시 한 개소만 설치 가능) (LH 건축 표준상세도 DA-20-306 참고)		
167	실시	건축	전용부	발코니		■ 거실 바닥마감 기준 발코니 바닥을 30mm이상 낮춤시공 하고 바닥구배는 1/150로 계획한다.		
168	실시	건축	전용부	발코니	난간	■ 분체도장 발코니 난간을 설치하되 색상은 발코니 외부 PL(플라스틱) 창호의 착색 바 색상과 유사한 색상으로 디자인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단, 입면분할창 등의 계획 시 하부는 안전유리를 사용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8조 준용)		
169	실시	건축	전용부	실외기실		■ 실외기실 시스템 루버는 가로, 세로 폭 900mm 이상으로 하고, 알루미늄 재질의 고정형 방충망을 설치한다.		
170	실시	건축	전용부	실외기실		■ 실외기 공기순환을 위해 시스템 루버 하부 골조턱 높이는 슬래브 바닥(마감전) +130mm 이하로 계획한다.		
171	실시	건축	부대·복리시설		창호	■ 부대복리시설의 외부창호는 PL(플라스틱) 창호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금속재질의 창호(열교차단재 적용)를 사용할 수 있다.		
172	실시	건축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공용세탁실	■ 공용세탁실의 세탁기 및 건조기는 유지관리 비용 및 관리인력 상주여부 등을 고려하여 코인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일반형으로 설치 후 사용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방식도 가능		
173	실시	건축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 공용세탁실, 피트니스센터 및 작은도서관 등 도난방지 및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주민공동시설에는 외부인 통제를 위한 출입통제시스템(카드식 등) 및 CCTV(사각지대 최소화)를 설치한다.		
174	실시	건축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의 실별 사용 용도를 고려하여 준공 후 즉시 시설사용이 가능하도록 피트니스 센터의 운동기구를 포함한 신발장, 주방가구, 테이블, 의자, 독서실 책상 등 기본 가구·집기류를 설치한다. (소모성 비품은 LH와 협의 배치)		

연번	단계	분야	부위	공간,공정	부위,자재	확인사항	적용여부	관련도면																													
175	실시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의 냉난방시설은 시스템화(천장형) 하되 좌식시설(공간)의 난방 시설은 바닥난방으로 계획한다.																															
176	실시	건축	부대·복리 시설	EPS/TPS		■ EPS/TPS실은 50mm 이상 문턱을 설치(차수관, 차수막 설치시 제외)하여 침수시 넘치지 않도록 계획한다.																															
177	실시	건축	부대·복리 시설	PIT		■ 설비배관, 승강기 등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한 점검구(출입문)를 설치하고 원활한 점검을 위해 작업자 출입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유효높이를 확보한다.																															
178	실시	건축	부대·복리 시설	PIT		■ PIT 바닥 방수는 시멘트 액체방수로 계획하고, PIT가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하구조물 부위별 방수공법을 적용한다.																															
179	실시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 (필로티 포함) 유효 천장고 계획시 설비·전기 배관(배관보온재 포함) 및 보 하부 단열재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80	실시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 (필로티 포함) 출입구 보행통로에 맨홀, 집수정 뚜껑 등 설치를 지양한다.																															
181	실시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반사경	■ 차량 통행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반사경을 설치한다.																															
182	실시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 차량 통행로의 맨홀, 집수정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플라스틱 자재 불가)																															
183	실시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코너 보호대	■ 차량 통행 인접 벽체, 기둥 등 코너 부위에는 보호대(1.0T 아연도강판+P.V.C)를 설치한다. (LH 건축 표준상세도 DA-83-201-1 참고)																															
184	실시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 지하주차장 경사로(램프) 계획 시 외기 노출부분에 우수침투 방지를 위해 지붕*을 설치하되, 처마길이는 정면(출입구) 1m 이상, 좌·우·배면 0.6m 이상(측면 개방시) 계획한다. *우수, 강설 유입방지를 고려하고 구조기술사 안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LH 건축 표준상세도 DA-83-105 ~ 105-4 참고)																															
185	실시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트렌치	■ 주차장 진출입부와 지하주차장 경사로(램프) 진입로 경계에 무소음트렌치를 설치한다.																															
186	실시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유도사인	■ 차량, 동호 유도사인을 설치한다.																															
187	실시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 양방향 동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경사로(램프) 계획 시 주차유도 시스템(입구종합 안내판- 층별 주차가능 대수 표시)를 층별 입구마다 설치한다.																															
188	실시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카스토퍼	■ 주차구획마다 카스토퍼(2EA)를 설치한다. - 카스토퍼 길이 900mm이상인 경우 1EA 설치가능하나, 장애인용 주차구획은 2EA 설치																															
189	실시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 지하구조면 보외벽 바스코버트 아래에 가인 계획한다 <table><tr><th colspan="2">구분</th><th>방수공법</th><th>비고</th></tr><tr><td rowspan="3">지하주차장 바닥</td><td>최상층</td><td>시트방수</td><td></td></tr><tr><td>중간층</td><td>시트방수</td><td></td></tr><tr><td>최하층</td><td>THK45 바닥배수판</td><td></td></tr><tr><td colspan="2">지하주차장 벽</td><td>외방수층+PP복합판넬 방수층보호재</td><td></td></tr><tr><td colspan="2">지하주차장 램프</td><td>시멘트 액체방수</td><td></td></tr><tr><td rowspan="2">PIT</td><td>바닥</td><td>시멘트 액체방수</td><td></td></tr><tr><td>벽</td><td>외방수층+PP복합판넬 방수층보호재</td><td></td></tr></table> * 외방수층 : 점착겔-시트 복합방수 또는 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 방수	구분		방수공법	비고	지하주차장 바닥	최상층	시트방수		중간층	시트방수		최하층	THK45 바닥배수판		지하주차장 벽		외방수층+PP복합판넬 방수층보호재		지하주차장 램프		시멘트 액체방수		PIT	바닥	시멘트 액체방수		벽	외방수층+PP복합판넬 방수층보호재			
구분		방수공법	비고																																		
지하주차장 바닥	최상층	시트방수																																			
	중간층	시트방수																																			
	최하층	THK45 바닥배수판																																			
지하주차장 벽		외방수층+PP복합판넬 방수층보호재																																			
지하주차장 램프		시멘트 액체방수																																			
PIT	바닥	시멘트 액체방수																																			
	벽	외방수층+PP복합판넬 방수층보호재																																			
190	실시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 지하주차장 최상층 슬래브는 시트방수로 계획하고, 방수층 보호를 위해 THK0.1 PE필름 및 THK80 누름콘크리트(수평부위+수직부위 200mm)로 계획한다. (LH 건축 표준상세도 DA-83-041-1 참고) * 지하 최상층 전기실/발전기실 및 환풍 등의 슬래브 방수도 위 기준을 준용한다.																															

연번	단계	분야	부위	공간,공정	부위,자재	확인사항	적용여부	관련도면								
191	실시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 지하구조물 외벽 방수는 외방수(점착겔-시트 복합방수 또는 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 방수)로 계획하고 방수층 보호를 위해 THK13 PP 복합판넬 방수층 보호재를 계획(시공사진 등 제출)하여야 한다. (LH 건축 표준상세도 DA-83-041-1 참고) 다만, 외방수 시공이 곤란한 아래 구간에 한해 내방수 적용 가능 (1) 대상구간 : ㉠ 흙막이-지하구조체 이격거리 1.5m 미만으로 외방수시공 협소구간 ㉡ 흙막이-지하외벽 합벽시공 구간 ㉢ 기초 단차 발생 구간 ㉣ 기타 현장여건에 따라 외방수 시공이 곤란한 구간 (2) <table><tr><th>구 분</th><th>적용공법</th></tr><tr><td>전가발전기실, 통신실, 헬룸</td><td>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 + 벽체배수판</td></tr><tr><td>지하주차장</td><td>시멘트 액체방수 + 벽체배수판</td></tr><tr><td>PIT, 물탱크실, 펌프실, DA</td><td>시멘트 액체방수 + 보호몰탈</td></tr></table> * 지하층 전기실/발전기실 및 헬룸 등의 벽체방수도 위 기준을 준용한다.	구 분	적용공법	전가발전기실, 통신실, 헬룸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 + 벽체배수판	지하주차장	시멘트 액체방수 + 벽체배수판	PIT, 물탱크실, 펌프실, DA	시멘트 액체방수 + 보호몰탈		
구 분	적용공법															
전가발전기실, 통신실, 헬룸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 + 벽체배수판															
지하주차장	시멘트 액체방수 + 벽체배수판															
PIT, 물탱크실, 펌프실, DA	시멘트 액체방수 + 보호몰탈															
192	실시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 지하주차장 최하층 바닥은 방수 없이 바닥 배수판(THK45) 위 섬유보강 무근 콘크리트(THK140)로 계획한다. (LH 건축 표준상세도 DA-10-104 참고) 단, 지하수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바닥방수, 영구배수공법 및 락앵커 등 부상방지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지하 최하층 전기실/발전기실, 헬룸 등의 바닥방수도 위 기준을 준용한다.										
193	실시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 지하주차장 중간층 바닥은 하부층으로의 누수 방지를 위해 시트방수 위 섬유보강 무근콘크리트(THK140)로 계획한다. (LH 건축 표준상세도 DA-10-103 참고)										
194	실시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 지하주차장 경사로(램프) 바닥은 시멘트 액체방수 위 섬유보강 무근콘크리트(THK100)로 계획하고, 문양콘크리트 등 미끄럼방지 조치를 한다.										
195	실시	건축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 벽면미관 향상 등을 위해 결로·누수 우려 부위, 기초단차 부위 등에는 내/외 방수층 위 벽체용 배수판을 설치할 수 있다.										
196	실시	기계		배관일반		■ 단위세대 급수·급탕배관은 이중배관(PB+CD) 방식을 적용한다. - 입상배관(STS 재질) 분기 직후 이중배관 적용										
197	실시	기계		배관일반		■ 오배수관은 PVC 배관을 적용한다. - 욕실 및 발코니/다용도실 : PVC 저소음관(복층관) - 지하층 및 필로티 천장 : 고강도 PVC관 - 그 외 부분은 VN, VP 계열 적용										
198	실시	기계		배관일반		■ 외부·옥상 우수관의 재질은 STS, 동합금 혹은 동등 이상으로 한다.										
199	실시	기계		배관일반		■ 배관의 보 관통, 슬라브·벽체 내 매립을 금지한다.(급수·급탕·난방용 이중배관, 에어컨 드레인관, 종합 오배수 인입배관 제외)										
200	실시	기계		배관일반		■ 배관 연결부속은 벽체 또는 바닥매립을 금지한다.										
201	실시	기계		배관일반		■ 동파방지를 위하여 외기에 면한 벽에는 수전 설치를 금지하고 모든 수전 하부에는 전기 콘센트 설치를 금지한다.										
202	실시	기계	전용부	배관일반		■ 세대내 PD/AD는 용도별로 각각 설치하고 층마다 동일한 위치에 배치하며, PD별 점검구(300X300 이상, STS재질)를 설치한다. - 주방과 욕실 인접시 동일 PD로 구획 가능하나, 배관은 각개 설치 - 욕실 PD에 한해 천장상부 내시경용 점검구(ø100)로 설치										
203	실시	기계	전용부	급수·급탕	수도계량기	■ 세대별로 복도(외기에 접하지 않는) 벽에 설치하고, 계량기함 내부는 동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온용 스티로폼 및 보온솜 충전 등										
204	실시	기계	전용부	급수·급탕	수도계량기	■ 수도계량기함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되 계량기 교체 및 앵글밸브 조작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한다.										
205	실시	기계	전용부	급수·급탕	분배기	■ 급수·급탕분배기는 싱크대 하부에 설치한다.(설치 공간 미확보시 LH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욕실 천장에 설치시 반드시 당해층 천장에 설치하여야 한다.(직하층 천장 금지)										
206	실시	기계	전용부	급수·급탕	분배기	■ 분배기로부터 각 수전류 1:1배관 적용(용도별 스티커 또는 표지판 설치)하고 욕실 점프 배관방식 적용시 SUB 분배기함을 별도 설치한다.										
207	실시	기계	전용부	급수·급탕	분배기	■ 싱크 연결용 급수·급탕 지수전이 있는 급수·급탕분배기를 적용한다.										

연번	단계	분야	부위	공간,공정	부위,자재	확인사항	적용여부	관련도면
208	실시	기계	전용부	급수·급탕	세탁기	■ 빌트인 세탁기 적용시 세탁용 배관은 주방 수전에서 분기하고, 분기 부분은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제품에 역류방지 기능 포함		
209	실시	기계	전용부		오배수	■ 욕실/다용도실의 오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한 개소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210	실시	기계	전용부	주방	오배수	■ 주방 배수는 멀티형 싱크배수 연결구(빌트인 세탁 배수관, 난방 퇴수관 등 연결)를 적용하고, 층상배관(슬라브 매립 금지)한다. - 오배수관이 침실·거실·주방 천장을 횡단하지 않도록 한다.		
211	실시	기계	전용부	욕실	오배수	■ 욕실 오배수 배관은 해당 PD 입상배관으로 최단거리 설계한다.(지나친 꺾임 및 주행 금지)		
212	실시	기계	전용부	발코니	오배수	■ 다용도실 및 발코니에 설치하는 배수관(에어컨 드레인관 포함)은 유지관리를 위해 노출 설치한다.(PD구획 지양)		
213	실시	기계	전용부	난방	보일러	■ 콘덴싱 가스보일러(배관커버 설치포함)는 환경표지인증제품(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적용한다. - 보일러 용량은 난방부하와 급탕부하를 비교하여 큰 값으로 선정한다.		
214	실시	기계	전용부	난방	보일러	■ 세대 내 보일러 연도와 개구부 사이 이격거리(600mm 이상) 확보, 세대 간 보일러 연도와 연도 사이 이격거리 (300mm 이상)를 확보하여야 한다.		
215	실시	기계	전용부	난방	보일러	■ 보일러 하부배관에 라인별로 볼밸브를 설치한다.		
216	실시	기계	전용부	난방	보일러	■ 응축수 처리를 위한 바닥배수를 계획한다.		
217	실시	기계	전용부	난방	보일러	■ CO경보기는 천장에서 300mm 이내에 설치한다. - CO경보기 전원용 전기콘센트 1구 추가(배터리 타입 지양)		
218	실시	기계	전용부	난방	보일러	■ 중부1,2지역과 남부지역의 1층 및 필로티 직상부 세대의 보일러 하부 노출배관(급수·급탕)은 15mm보온+발열선을 적용한다.(그 외 지역은 15mm보온만 적용) - 중부1,2지역 및 남부지역 시·군·구 목록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참조 - 난방배관(공급, 환수)은 전 지역 15mm 보온 적용 - 발열선 및 부속자재는 보온공사 표준시방서(KCS 31 20 05)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발열선 전용 콘센트 1구 확보		
219	실시	기계	전용부	난방		■ 2-Room 이상은 실별온도제어시스템을 적용하고, 온수분배기 실구획별(방1, 방2, 거실 등)로 인식표 및 난방구획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 난방구획도는 준별 구획을 색상으로 구분하고, 좌·우타입을 고려하여 평면도 작성 - 난방구획에 맞게 실별 밸브마다 색상 구분		
220	실시	기계	전용부	난방		■ 온수분배기는 싱크대 하부에 설치하고, 실별로 Zonning(회오리 방식)한다. - 설치 공간 미화보시 등과 하여 결정한다 ※ 난방코일방식 (LH 표준 회오리방식) 		
221	실시	기계	전용부	난방		■ 에어콕과 별도로 난방수 퇴수 기능을 확보한다.		
222	실시	기계	전용부	난방	난방코일	■ 코일피치는 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223	실시	기계	전용부	난방	난방코일	■ 욕실, 붙박이장 및 주방가구(배수관 간섭부위 제외) 공간에도 난방코일을 설치한다.		
224	실시	기계	전용부	주방	환기	■ 화기의 지지표면과 레인지후드의 가장 낮은 부분의 이격거리는 650m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25	실시	기계	전용부	주방, 욕실	환기	■ 주방 및 욕실환기는 개별배기 방식을 적용한다.(공용배기 옥상루프팬 방식 금지) - 욕실의 전용배기는 다른 계통의 배기와 혼합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한다.		

연번	단계	분야	부위	공간,공정	부위,자재	확인사항	적용여부	관련도면
226	실시	기계	전용부	주방, 욕실	환기	■ 환기배관 연결부위는 주방 레인지후드는 알루미늄 호일 4겹, 욕실 배기팬은 흡음 2중 플렉시블관을 적용한다.		
227	실시	기계	전용부	주방, 욕실	환기	■ 옥상 배기방식 적용시 입상배관은 건식 AD(스파이럴덕트)를 적용하고, 옥상 층에 무동력 흡출기를 설치한다.		
228	실시	기계	전용부	주방, 욕실	환기	■ 옥상 배기방식 적용시 레인지후드 및 욕실팬에 방화댐퍼(FD) 및 전동댐퍼(MD)를 설치한다.		
229	실시	기계	전용부	주방, 욕실	환기	■ 옥상 배기방식 적용시 제품 성능 - 레인지후드 : 침니형, 고정압 정풍량팬(360CMH 이상), 일반 AC 모터 적용 - 욕실팬 : 고정압 정풍량팬(60CMH 이상), 일반 AC 모터 적용 - 배관경 : 레인지후드(D125), 욕실팬(D100)		
230	실시	기계	전용부	주방, 욕실	환기	■ 당해층 배기방식 적용시 배관길이는 20m 이내여야 한다.(20m 초과시 당해 층 적용 불가) - 결로방지를 위해 벽체에서 내측으로 1.5m까지 보온재를 설치한다(10T). - 결로방지를 위해 전동댐퍼(MD)를 설치한다.(방화댐퍼는 미설치)		
231	실시	기계	전용부	주방, 욕실	환기	■ 당해층 배기방식 적용시 제품 성능 - 레인지후드 : 침니형, 고정압 정풍량팬(360CMH 이상), BLDC 모터 적용 - 욕실팬 : 고정압 정풍량팬(90CMH 이상), BLDC 모터 적용 - 배관경 : 레인지후드(D125), 욕실팬(D100)		
232	실시	기계	전용부	주방, 욕실	환기	■ 당해층 배기방식 적용시 배관 구성 - 주방 : 레인지후드 + 플렉시블관 + 스파이럴덕트 + 연결대 + 슬리브 + 캡 - 욕실 : 욕실팬 + 플렉시블관 + PVC 이중클린호스 + BDD 연결대 + 슬리브 + 캡		
233	실시	기계	전용부	세탁실	환기	■ 세대 내 세탁실 별도 설치 시 환기팬을 계획하여야 한다.		
234	실시	기계	전용부	드레스룸	환기	■ 전열교환기 미설치 지구는 드레스룸에 별도의 배기팬을 계획하여야 한다. (욕실 배기팬 겸용 금지)		
235	실시	기계	전용부	수납장		■ 욕실장은 슬라이딩 2Door(열림·닫힘 자동댐퍼 포함) 사양으로 계획하고, 2면 이상 코킹 처리한다. - 욕실장 및 거울 등의 탈락 예방을 위하여 고정양가 등을 사용하여 벽체에 고정하고, 2면이상 코킹 처리(단, 샤워부스 등이 인접하여 불가 시 1면이상)하여야 한다.		
236	실시	기계	전용부	수전류		■ 세탁용수전과 손빨래수전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나, 공간협소시 2구형 겸용으로 설치 가능하다. - 상세기준은 「신축매입임대주택 마감재 기준」을 따른다.		
237	실시	기계	전용부	수전류		■ 세탁용수전은 바닥마감면 +1300mm로 설치한다. - 세탁기 후면에 설치시 바닥마감면 +1500mm		
238	실시	기계	전용부	수전류		■ 냉수, 온수 가로꼭지의 이격거리는 150~200mm를 확보한다.		
239	실시	기계	전용부	가스	배관	■ 가스배관 이음부(용접 이음 부는 제외)와 전기콘센트 및 화기의 이격거리 (150mm 이상)를 확보하여야 한다.		
240	실시	기계	전용부	가스	배관	■ 은폐배관 적용시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호스를 사용하고, 아래의 안전조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 900㎢ 이상 점검구 설치, 다기능 가스안전미터, 누출점검용 가스미터		
241	실시	기계	전용부	폐열회수설비	전열교환기 (스마트환기 시스템)	■ 1차측 필터는 프리필터(간편구조로 청소가능), 2차측 필터는 고성능 외기청정필터(HEPA필터)를 적용한다. - 필터 성능은 항바이러스 성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242	실시	기계	전용부	폐열회수설비	전열교환기 (스마트환기 시스템)	■ 빗물유입 방지가 가능한 환기구 캡을 적용한다.		
243	실시	기계	전용부	폐열회수설비	전열교환기 (스마트환기 시스템)	■ (기능) IoT 센서를 통해 실내의 미세먼지 및 CO2 농도를 측정하여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며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244	실시	기계	전용부	폐열회수설비	전열교환기 (스마트환기 시스템)	■ (제어) 환기제어용 컨트롤러를 별도로 설치한다. - 무선 리모콘 제어방식 사양		
245	실시	기계	전용부	폐열회수설비	전열교환기 (스마트환기 시스템)	■ (댐퍼) 환기유닛 외측(OA, EA)에는 BDD(역풍방지댐퍼), 내측(SA, RA)에는 MD(전동댐퍼)를 설치한다.		

연번	단계	분야	부위	공간,공정	부위,자재	확인사항	적용여부	관련도면								
246	실시	기계	전용부	폐열회수설비	전열교환기(스마트환기시스템)	■ 실별(거실 포함)로 급기 및 배기 디퓨저를 각 1개소 이상씩 설치하고 비거주 공간(펜트리, 드레스룸 등)은 배기 디퓨저를 1개소 이상 설치한다.										
247	실시	기계	전용부	소방	일반	■ 보일러 상부에는 자동확산 소화기를 설치한다.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시 제외)										
248	실시	기계	전용부	소방	일반	■ 세대별로 1대씩 1.5kg이상(능력단위 A-2,B-3,C급) 소화기를 비치한다.										
249	실시	기계	전용부	소방	자동소화장치	■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의 주방에 국타입의 종류에 적합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방호면적 0.4㎡ 이상)를 설치한다. - 차단장치는 상시확인 및 점검이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250	실시	기계	전용부	소방	스프링클러	■ 중부1, 2지역 발코니 및 보일러(실외기)실에 스프링클러 설치시 드라이팬던트 헤드를 적용한다.(그 외 지역은 일반 측벽형 헤드 적용) - 중부1, 2지역 시·군·구 목록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참조										
251	실시	기계	공용부	급수·급탕	옥외매물	■ 관로의 매설 깊이는 지역별 동결심도 아래로 하며 금속배관 적용시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252	실시	기계	공용부	급수·급탕	기초	■ PB관 또는 STS 재질(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을 적용하며, 배관보호용 보온재(25T 이상)를 설치한다.										
253	실시	기계	공용부	급수·급탕	필로티	■ 필로티 상부 세대 급수입상 배관 하부에 드레인밸브를 설치하고 배수계획을 한다.										
254	실시	기계	공용부	급수·급탕	입상배관(PD내)	■ 입상배관은 STS 재질(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이며, 최상부에 수격방지기(밸브포함)를 설치 하고, 수격방지기가 설치되는 입상관 말단부위에는 고정대를 설치한다.										
255	실시	기계	공용부	오배수		■ 옥상 통기관은 지수판 슬리브를 사용하며, 바닥으로부터 600mm 이상 인출한다. - 통기관 말단은 2-Elbow 후 스텐망 마감(메시8)을 준용한다.										
256	실시	기계	공용부	오배수	필로티	■ 필로티 천장내 배관에 배수트랩 설치를 금지하고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구배시공하며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한 개소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 슬라브, 벽체, 기둥에 오배수 배관 매립 금지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LH와 협의 후 역류도파장치를 수평배관 말단에 설치한다.										
257	실시	기계	공용부	오배수	승강기	■ 승강기 설치시 승강기 전용 집수정을 구획하고, 해당 집수정에 대한 배수계획을 마련한다.(배수펌프 설치 등)										
258	실시	기계	공용부	우수관		■ 옥상 우수관은 하층부 발코니로 방류되지 않도록 집수정 또는 1층 우수 트랜치와 직접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259	실시	기계	공용부	우수관		■ 우수관의 곡관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해 급격하게 꺾지 않도록 한다.										
260	실시	기계	공용부		보온(열선)	■ 발열선 및 부속자재는 보온공사 표준시방서(KCS 31 20 05) 기준에 적합한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용부에 설치되는 발열선은 제어반형(전력제어 방식)으로 설치한다.(콘센트형 발열선 금지)										
261	실시	기계	공용부		보온(열선)	■ 필로티(천장내 또는 외기에 면한 PD)에 설치되는 배관(급수, 오배수, 소화)은 배관별로 동파방지 발열선을 설치한다.										
262	실시	기계	공용부	소방	보온(열선)	■ 소화배관 발열선 기준 : 25mm보온+발열선 - <table><tr><th>지역구분</th><th>적용 CASE</th></tr><tr><td rowspan="3">중부1,2 지역</td><td>복도형 공동주택으로서 외기 또는 비난방실과 면한 벽면이 2면 이상인 PD</td></tr><tr><td>계단식 공동주택으로서 벽면의 1면 이상이 외기와 직면한 PD</td></tr><tr><td>계단식 공동주택의 1층, 2층 및 최상층 승강장의 소화PD 및 천정내부</td></tr><tr><td>남부지역</td><td>복도형 아파트로서 외기 또는 비난방실과 면한 벽면이 2면 이상인 PD</td></tr></table> - 시공범위와 설치기준은 현장여건에 따라 LH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역구분	적용 CASE	중부1,2 지역	복도형 공동주택으로서 외기 또는 비난방실과 면한 벽면이 2면 이상인 PD	계단식 공동주택으로서 벽면의 1면 이상이 외기와 직면한 PD	계단식 공동주택의 1층, 2층 및 최상층 승강장의 소화PD 및 천정내부	남부지역	복도형 아파트로서 외기 또는 비난방실과 면한 벽면이 2면 이상인 PD		
지역구분	적용 CASE															
중부1,2 지역	복도형 공동주택으로서 외기 또는 비난방실과 면한 벽면이 2면 이상인 PD															
	계단식 공동주택으로서 벽면의 1면 이상이 외기와 직면한 PD															
	계단식 공동주택의 1층, 2층 및 최상층 승강장의 소화PD 및 천정내부															
남부지역	복도형 아파트로서 외기 또는 비난방실과 면한 벽면이 2면 이상인 PD															
263	실시	기계	공용부	필로티	점검구	■ 필로티층에 공용부 배관 유지보수를 위한 PD 및 점검구를 설치한다. - 점검구는 STS재질을 적용하고, 점검구 문짝 안쪽에 단열재(20T)를 부착한다. - 점검구 규격은 현장여건별 LH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64	실시	기계	공용부	가스	복도	■ 입상배관을 복도(비환기 실내)에 설치시 비파괴검사를 실시한다. - 비파괴검사시 80mm미만 자분탐상(MT), 80mm이상 방사선투과(RT)를 준용한다.										

연번	단계	분야	부위	공간,공정	부위,자재	확인사항	적용여부	관련도면
265	실시	기계	공용부	가스	외부	■ 가스 배관은 주배관에서 세대별 가지배관이 분기되도록 설계한다.		
266	실시	기계	공용부	가스	외부	■ 필로티 천장에서 가스배관 횡단 설치는 금지한다.(필로티 층고 확보 및 안전)		
267	실시	기계	공용부	가스	가스계량기	■ 세대를 방문하지 않고 외부에서 검침 가능한 구조(직독식 또는 원격식)로 계획한다. - 현장여건에 따라 건물외부에 가스계량기 집합설치 가능		
268	실시	기계	공용부	소방	일반	■ 필로티 상부에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분말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다. - 설치 부위 : 출입문, 재활용 분리수거장 상부 - 필로티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시 제외		
269	실시	기계	공용부	환기	제습기	■ 지하 최하층 승강장에 제습기를 설치하며, 제습수 처리를 위한 배수계획을 마련한다. - 상세 설치기준은 LH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70	실시	기계	공용부	자동제어		■ 자동제어(제어, 계측, 경보) 사양 및 관제점은 기본사양을 준용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LH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지역난방, 오수펌프, 빗물저류조 등)		
271	실시	기계	공용부	자동제어	제어	■ 팬류(펌프실, 지하주차장 등), 발열선 기동/정지 및 상태감시		
272	실시	기계	공용부	자동제어	제어	■ 펌프류(급수, 소화, 배수 등) 상태감시		
273	실시	기계	공용부	자동제어	제어	■ 밸브류(펌프실 정수위조절밸브) 상태감시		
274	실시	기계	공용부	자동제어	계측	■ 외기온도,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온도, 발열선 온도지시		
275	실시	기계	공용부	자동제어	계측	■ 가압급수펌프 압력지시		
276	실시	기계	공용부	자동제어	계측	■ 외기습도, 펌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습도지시		
277	실시	기계	공용부	자동제어	계측	■ 지하저수조, 옥상고가수조(소화용) 액면지시		
278	실시	기계	공용부	자동제어	계측	■ 지하주차장 CO농도 감지		
279	실시	기계	공용부	자동제어	경보	■ 지하저수조, 옥상고가수조(소화용)의 고수위/저수위		
280	실시	기계	공용부	자동제어	경보	■ 집수정(펌프실, 지하주차장, 전기실 등) 고수위		
281	실시	기계	공용부	자동제어	경보	■ 저수조실, 펌프실, 기계실, 전기실 침수 경보		
282	실시	기계	공용부	자동제어	경보	■ 가압급수펌프, 발열선의 운전 이상		
283	실시	기계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설치 시 화재진압 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진압 시설물을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인근에 비치하고 해당 사항을 도면에 표기한다. [붙임5.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진압 계획 참고]		
284	실시	기계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 지하주차장은 제1종 기계환기방식(기계급기+기계배기)을 적용한다. 다만, 데크식 주차장은 자연환기를 기본으로 하되 개구부 면적이 바닥면적의 1/40 미만인 경우 3종환기(무덕트 유인팬+배기팬)로 계획한다.		
285	실시	기계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보온(열선)	■ 지하1층 주차장 보온기준 - 급수배관 : 외기유입 50m 이내까지 25mm보온+발열선 적용 - 소화배관 : 전 구간 25mm보온+발열선 적용(S/P 프리액션밸브 2차측 제외) - 오배수배관 : 외기유입 30m 이내까지 50mm보온 적용		
286	실시	기계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 기계적 환기설비 설치 시 LH 담당자와 협의하여 환기구 계획 및 용량을 결정한다.		
287	실시	기계	부대·복리 시설	환기		■ 펌프실(기계실), MDF실, 방재실은 제1종 기계환기방식(기계급기+기계배기)을 적용한다.		
288	실시	기계	부대·복리 시설	환기		■ 전기실, E/V홀 통로, E/V기계실은 제3종 기계환기방식(자연급기+기계배기)을 적용한다.		
289	실시	기계	부대·복리 시설	저수조		■ 저수조 설치시 침수방지를 위해 정수위밸브(전자식)와 기계식 수위조절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탱크 상부에 체류하는 염소가스 배출을 위한 타이머 부착형 환풍기 설치		
290	실시	전기·정보 통신		배관일반		■ 모든 배관은 기계설비와 간섭되지 않도록 설계하며, 누수가 우려되는 배관보다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연번	단계	분야	부위	공간,공정	부위,자재	확인사항	적용여부	관련도면
291	실시	전기·정보 통신		배관일반		■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입하여 시공한다.		
292	실시	전기·정보 통신		배관일반		■ 각 세대의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mm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결로방지용)를 설치하여야 한다.		
293	실시	전기·정보 통신			감지기	■ 소방시설법을 준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 - 일반인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된 화재수신반은 작동방지 점검창(커버)를 설치 - 비상방송 앰프 전원인입부에 NCT(Network Control Terminal)를 설치		
294	실시	전기·정보 통신			감지기	■ 소방시설법, 화재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단독경보형(배터리 : 리튬전지, 교환 주기 : 10년) 이상의 감지기 및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를 설치한다.		
295	실시	전기·정보 통신			감지기	■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화재 경보음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85dB 이상으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연립 및 다세대주택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동형을 설치하여야 한다.		
296	실시	전기·정보 통신	전용부			■ 세대 부하용량은 전용면적(㎡) x 표준부하(30 VA/㎡) + 대용량기기 실부하(VA)로 하며, 세대용량기기 대용량 실부하는 전용면적별로 아래의 용량을 합산한다. - (전용면적 60㎡ 이하) 3,000 VA, - (전용면적 60㎡ 초과) 4,000VA * 세대 부하용량계산서(엑셀파일) 제출		
297	실시	전기·정보 통신	전용부	현관	세대분전반	■ 세대전기분전반 내부 분기회로에 부하명을 주기하며, 조작이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신발장 내 설치 불가)		
298	실시	전기·정보 통신	전용부	현관	세대분전반	■ 대지전압이 150V초과 300V이하 저압전로 세대 인입구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에어컨, 전기쿡탑은 별도 회로 구성한다) - 세대분전반 전등, 전열회로(에어컨 포함), 물기가 있는 장소 전열회로 : 15mA 이하 - 그외 장소의 저압전로 : 30mA 이하 - 동작시간 : 0.03초 이내		
299	실시	전기·정보 통신	전용부	현관	일괄소등스위치	■ 현관 벽체에 터치식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한다.		
300	실시	전기·정보 통신	전용부	거실, 침실	통신용 수구	■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2구형 콘센트를 설치한다.(인터넷 장비 전원공급용)		
301	실시	전기·정보 통신	전용부	거실, 침실	조명기구	■ LED패널이 3개 이상인 조명기구는 숙음제어가 가능하도록 2회로로 구성하고 결선시 접지한다.		
302	실시	전기·정보 통신	전용부	거실, 침실	조명기구	■ 설계·디자인 예시자료를 참고하여 실별 적절한 조명기구 설치한다. [자료실 업로드-3. 매입임대주택 실내디자인 가이드라인 참고]		
303	실시	전기·정보 통신	전용부	거실, 침실	비디오폰	■ 세대단말기(칼라 10인치 이상), 도어카메라· 경비실(관리실)기· 공동현관기· 네트워크 장비· 서버 등은 같은 회사제품 또는 상호 호환 가능한 제품을 사용한다.		
304	실시	전기·정보 통신	전용부	거실, 침실	비디오폰	■ 세대단말기와 공동로비폰을 연결하여 세대 내에서 출입문 개폐할 수 있도록 한다.		
305	실시	전기·정보 통신	전용부	거실, 침실	홈네트워크	■ (해당 시)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등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여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306	실시	전기·정보 통신	전용부	거실, 침실	에어컨	■ 에어컨 전원은 별도 전용회로로 구성하고, 거실(스탠드형) 및 안방(벽걸이형)에 1개소씩 콘센트 설치한다.		
307	실시	전기·정보 통신	전용부	주방		■ 주방 전기콘센트는 수전, 가스밸브와 충분한 이격거리(150mm) 준수한다.		
308	실시	전기·정보 통신	전용부	전열기구		■ 축세대 외벽측에 콘센트, 스위치는 결로방지를 위해 설치를 금지하고 내측벽으로 이동하여 설치한다.		
309	실시	전기·정보 통신	전용부	전열기구		■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는 MH 0.3m, 스위치는 MH 1.2m에 설치한다.		
310	실시	전기·정보 통신	전용부	전열기구		■ 세대 스위치 및 콘센트(가구배치 고려)는 아래와 같은 규격으로 설치한다. - 스위치 : 폴리카보네이트(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250V급 16A 정격 사용(2개 이상시 연용 적용) - 콘센트 : 1) 250V급 16A 이상의 정격 및 화장실·세탁실용 콘센트는 방적형커버 사용 2) 통신세대단자함 내부 2구형 콘센트 설치(인터넷 장비 전원공급용) - 통신용수구 : 음성&데이터(2구형)+TV(1구형)		

연번	단계	분야	부위	공간,공정	부위,자재	확인사항	적용여부	관련도면
311	실시	전기·정보 통신	전용부			■ 세탁실 및 보일러실은 보일러 전원, 동파열선, CO감지기, 세탁기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구(콘센트)를 확보하여야 한다.		
312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전기실	수배전반	■ 수배전반 내 MOF(계기용 변성기)는 에폭시 몰드형을 설치하여야 한다.		
313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전기실	수배전반	■ 수배전반은 상부 누수로 인한 정전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물막이판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전기실	수배전반	■ 발전기운전반의 주차단기는 ACB(저압) 또는 VCB (고압)을 사용한다.		
315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기타	통합계량기함	■ 통합계량기함은 집합형(세대별, 공용별)으로 설치*하고 벽체 매입 시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눈·비와 무관한 장소에 설치		
316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기타	배전반	■ 옥외 주 배전반(계량기함 포함)은 우천 시 빗물이 직접 들이치지 않는 필로티 등에 설치하고, 방수형 외함(IP44 이상 또는 방수 캡 적용)을 계획하여야 한다. - 설치높이는 상단기준 1.8m 이하로 하며, 하단은 침수 및 습기 유입 방지를 위해 바닥으로부터 100mm 이상을 확보하고, 배선 관로 입구는 방수 실링 처리할 것		
317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기타	인입선로	■ 전기(통신) 인입선로는 지중으로 인입 및 맨홀(핸드홀) 사용한다. (단, 현장여건에 따라 지중인입이 불가능 할 경우는 LH와 협의 후 결정) - 특고압 수전 지구의 옥외 인입배관은 향후 유지보수 및 부하증설을 고려하여 해당구간에 소요되는 배관의 직상굴기 예비배관 1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18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기타	인입선로	■ 전력인입 맨홀은 차량 등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319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기타	인입선로	■ 인입 맨홀부터 구내용 정보통신 장치가 설치된 공간까지 외부통신 사업자용 예비배관(HI 36C*6) 추가한다.		
320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기타		■ 낙뢰, 개폐 서지 등 외부 이상전류에 의한 장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메인 전원 분전반 및 주요 통신 입출력단에 적절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적용하여야 한다.		
321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승강기	■ 승강기는 준공 후 LH가 “승강기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결하여 원격관리할 수 있도록 승강기 제어반과 국선단자함(통신) 사이에 인터넷 연결을 위한 공배관(CD-P 16mm)을 계획하여야 한다.		
322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승강기	■ 이동케이블(T케이블)은 피트사다리와 간섭되지 않게 설치하여야 하며, 카 상부 점검 및 비상스위치는 규정에 따르되 점검자가 손을 뻗어 닿는 위치에 설치한다.		
323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승강기	■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는 승강로에 설치할 경우 전용함을 설치하거나, 시공상 한계나 부득이한 경우 승강장에 일반인이 쉽게 손대지 못하는 위치에 전용함을 설치하여 별도의 시건장치를 사용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324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승강기	■ 엘리베이터의 가이드레일은 엘리베이터용으로 3면이 정밀기계가공된 T형 레일을 사용한다.		
325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승강기	■ 10층 이상의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는 기계실 있는 타입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권장한다.		
326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옥상	조명기구	■ 옥상조명은 빛 공해, 음영 발생 및 출입문과의 간섭을 고려하고, 옥상 캐노피 부위 조명기구는 센서작동형으로 설계한다.		
327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옥상	피뢰설비	■ 관련법령에 따라 피뢰 및 접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옥탑의 난간 및 장식구조물의 금속체 부분은 옥상 수리부에 등전위본딩도체로 본딩하여야 한다.		
328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옥상	피뢰설비	■ 접지극은 기본적으로 통합기초접지(보호+피뢰+통신)를 적용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한다.		
329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옥상	피뢰설비	■ 돌침 및 TV 안테나 지지용 지선은 각 3방향으로 고정한다.		

연번	단계	분야	부위	공간,공정	부위,자재	확인사항	적용여부	관련도면				
330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옥상	태양광 (해당시)	■ 모듈용량 630Wp(양면) 이상, 효율 22.5%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태양전지 모듈과 인버터(계통연계형)는 KS 인증제품을 사용, 인버터에는 원격 모니터링 기능과 통신포트를 내장하여야 한다. - 태양광 발전 감시반은 옥상 센서(온도, 일사량)와 인버터의 발전량, 전압 등을 RS-485/232 PORT 또는 그 이상 동등자재를 사용해 RTU 집합,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으로 전송시켜야 한다. - 원격 모니터링을 위해 옥상과 국선단자함(통신) 사이에 인터넷 연결을 위한 공배관(CD-P 16mm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전자료 분석 및 사후 검토 등을 위해 모든 수집데이터는 시스템 내 9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331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옥상	CCTV	■ 건축물 옥상 출입문에 CCTV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332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CCTV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관련법령, 국토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및 지자체 조례 등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33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CCTV	■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녹화저장확인 장치는 관리사무소 내부(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 CCTV는 200만 화소 이상, 녹화저장확인장치는 30일 이상 저장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보안성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용 품질인증서(TTA 시험인증서 또는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 및 MAC 어드레스(제조사, 제조국 식별 가능)을 적용한 국산제품을 계획하여야 한다.						
334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CCTV	■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녹화저장확인 장치는 1층 동 출입문 안쪽 바닥면에서 2000m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CCTV는 200만 화소 이상, 녹화저장확인장치는 30일 이상 저장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보안성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용 품질인증서(TTA 시험인증서 또는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 및 MAC 어드레스(제조사, 제조국 식별 가능)을 적용한 국산제품을 계획하여야한다. - CCTV는 원격관제가 가능하도록 ONVIF 및 RTSP 기능 지원이 가능한 제품으로 계획하여야한다. - LH에서 운영 중인 매입임대 스마트 관제시스템과 연동하여 원격으로 녹화 장치에 저장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녹화저장확인 장치와 국선단자함 (통신) 사이에 인터넷 연결을 위한 공배관(CD-P 16mm 이상)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335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CCTV	■ 녹화저장확인 장치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S/W 설치·운영 및 현관 동선에 지장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 개인정보보호용 S/W는 영상감시 접속로그, 운영이력관리, 포렌식 기반 영상 반출관리, 영상정보 제공시 모자이크 처리 및 열람횟수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36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CCTV	■ CCTV 촬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도면상 CCTV 감시화각을 표기 후 사각지대 발생 시 LH와 설치 위치, 수량 등을 협의한다.						
337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CCTV	■ 카메라 형상은 필로티 및 옥외는 볼렛형, 실내는 돔형을 적용한다.						
338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출입구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의거, 전자 출입시스템 및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339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기타		■ 관련법령에 따라 피난구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 등을 설치한다.						
340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주차관제시스템		■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맞는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차량·차도번호를 위한 부착장치(차도번호 인식표 등)를 계획하여야 한다. <table><tr><th>50세대 미만</th><th>50세대 이상</th></tr><tr><td>리모콘, RF카드, 스마트폰 앱방식 등 적용 - 차량입차후 차단바 자동다운시스템 - 차량 출차시 자동루프 출차 방식 적용</td><td>차량번호 인식방식</td></tr></table> * 현장여건(경비실 미설치 지구 등)에 따라 설치 제외 가능하나, 설치여부 및 설치방식, 상세사양은 LH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0세대 미만	50세대 이상	리모콘, RF카드, 스마트폰 앱방식 등 적용 - 차량입차후 차단바 자동다운시스템 - 차량 출차시 자동루프 출차 방식 적용	차량번호 인식방식		
50세대 미만	50세대 이상											
리모콘, RF카드, 스마트폰 앱방식 등 적용 - 차량입차후 차단바 자동다운시스템 - 차량 출차시 자동루프 출차 방식 적용	차량번호 인식방식											
341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주차관제시스템		■ 암(Arm)이 내려오는 도중 후미차량이 루프코일에 감지되면 차량의 보호를 위해 자동으로 개방되는 리바운딩을 내장하여야 한다.						
342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주차관제시스템		■ (번호인식 방식) TCP/IP 통신방식 배선시 주차차단기와 주차관제서버와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광케이블 적용한다.						
343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주차관제시스템		■ (번호인식 방식) 번호인식기는 CPU 쿼드코어 2.5Ghz, 메모리 2GB, 인식을 98%(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기준) 이상으로 한다.						

연번	단계	분야	부위	공간,공정	부위,자재	확인사항	적용여부	관련도면										
344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주차관제시 스템		■ (번호인식 방식) 주차관리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주차장비와 연동하여 각종 데이터를 수집·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345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주차관제시 스템		■ (번호인식 방식) 모든 로컬기기를 원격감시 및 제어하며, 기초 운영정보를 로컬기기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346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주차장	조명기구	■ LED램프는 LED컨버터(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여 구동하며,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품을 사용(컨버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에 명기된 제품사용) 단, 평판형 LED조명기구는 V/C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품을 사용한다. <table><tr><th>램프전압(V)</th><th>램프전류(A)</th><th>전광속(lm)</th><th>광속유지율(%)</th><th>캡(CAP)</th></tr><tr><td>32~49</td><td>0.57±0.005</td><td>2300 이상</td><td>95 이상</td><td>G13, D12</td></tr></table>	램프전압(V)	램프전류(A)	전광속(lm)	광속유지율(%)	캡(CAP)	32~49	0.57±0.005	2300 이상	95 이상	G13, D12		
램프전압(V)	램프전류(A)	전광속(lm)	광속유지율(%)	캡(CAP)														
32~49	0.57±0.005	2300 이상	95 이상	G13, D12														
347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주차장	조명기구	■ 주차경보등은 아래와 같은 위치 및 규격에 설치한다. - 최초 옥외 진입로 1기, 각 층 진입부위 천장 각 1기 설치 - PVC(난연재질) 또는 강판두께 STS 0.8T 및 황색 또는 적색 플라스틱 커버 - 부저소리 90dB이하 음량조절 가능 - 스테인리스(STS304 또는 동등 이상), 강판 두께 1.5mm이상 또는 알루미늄(AL6000계열 또는 동등 이상) 3.0mm이상 LED 경광등 설치(전기용품안전인증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348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유도등		■ 유도등은 아래와 같은 위치 및 규격에 설치한다. - 설치대상 가. 지하층에는 중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나. 11층 이상 지상층 중형(200mm 이상)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 다. 10층 이하 지상층 소형(100mm 이상)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 라. 피난계단 및 피난층 출입구 주변에 시각 및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음성점멸유도등) 설치 (단, 11층 이상 중형 및 10층 이하 소형) - 설치위치 가. 피난구유도등(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곳에 설치) 1) 옥내로부터 직접 시장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 3) 1), 2) 출입구 인근 천장 및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나. 통로유도등(복도·계단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주차장 :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위치) 1) 복도 및 주차장통로유도등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이하마다 2) 계단통로유도등 : 계단참마다 - 설치용량 : 축전지용량 60분 이상												
349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쓰레기수거 시설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화재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한다.												
350	실시	전기·정보 통신	공용부		원격검침시 스템 (50호 이상 권장)	■ 관리사무실이 계획되어 있는 50호 이상 건축물은 세대, 공용부 및 부대시설에 설치된 각 계량기의 검침량을 세대를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검침이 가능한 원격검침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351	실시	조경	공용부	지붕 및 옥 탑		■ 옥상 조경 계획 시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피·초화류, 관목을 권장하고, 일정한 형태와 무늬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재부위 전체를 지속적으로 다듬어야 하는 수종(측백, 회양목, 옥향 등)은 지양한다.												
352	실시	조경	공용부	지붕 및 옥 탑		■ 옥상 조경 계획 시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 등에 따라 적정 토심(배수층 두께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 초화류, 지피식물 : 15cm 이상(인공토양 사용시 10cm 이상) - 소관목 : 30cm 이상(인공토양 사용시 20cm 이상) - 대관목 : 45cm 이상(인공토양 사용시 30cm 이상)												
353	실시	조경	공용부	지붕 및 옥 탑		■ 옥상 조경은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건축물의 하부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수 및 배수시설(드레인 등)을 설치 한다.												
354	실시	조경	공용부	수목		■ 식재 수종은 지역의 향토종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355	실시	조경	공용부	수목		■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 하여야 한다.												
356	실시	조경	공용부	수목		■ 건축물 등으로 인해 항상 그늘이 발생하여 일조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음지에 강한 교목(근원직경 12cm이상의 상록수 및 낙엽수)과 그늘에 강한 지피류(맥문동, 수호초 등)를 선정하여 식재한다.												
357	실시	조경	공용부	수목		■ 병해충 및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고 하자율이 높은 수목은 가급적 배제한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시공 가이드라인

2026. 09.



한국토지주택공사

< 목 차 >

신축 매입임대주택 시공 가이드라인

- 붙임1. 주요 마감자재 제안서 / 사용 목록(2 / 4단계 약정이행점검 시)
- 붙임2. 신축 매입임대주택 영상 촬영 부위 및 기준
- 붙임3. 건축물 기밀성능 시험방법 및 기준
- 붙임4. 시설물 사전점검 결과표(4단계 점검대비 사업자 사전작성)
- 붙임5. 준공사진
- 붙임6. 준공시점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양식

신축 매입임대주택 시공 가이드라인

- 민간의 우수한 시공 노하우를 적용하되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최소 품질 확보를 위한 시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별 매입여건 및 구조, 안전 등을 감안해 LH 요구에 따라 일부 설계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가이드라인에 없는 사항이라도 약정이행점검 단계에서 LH가 반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사업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시공 가이드라인의 일부로서 세부 기준 참고 및 단계별 제출서류 확인 등에 활용할 업무자료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적용 바랍니다.

※ (다운방법) LH 청약플러스>임대주택>알려드려요>자료실 (검색어:매입약정)

<자료실 게시 참고자료 목록>

- LH 표준상세도
- LH 매입임대주택 제안평면
- LH 매입임대주택 실내디자인 가이드라인
- LH 매입임대주택 공급유형별 조명 설계가이드라인
- LH 매입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 설계 및 실내디자인 가이드라인

□ 개요

- (적용범위) 민간 매입약정 주택 및 공공리모델링 주택
- (구성) 시공 가이드라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LH 표준상세도

□ 활용방안

- (시공기준)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착공·시공·준공 시 반영
- (제출서류) 약정이행점검 단계별 시공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확인 등

< 단계별 약정이행점검 >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공사단계			기초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준 공	잔금지급
점검시기			철근배근 완료시	최상층 슬래브 철근배근 완료시	방수 단열공사 및 바닥완충재 완료시 마감공사 필요 시	사용승인(검사) 완료 후 1주일 내외	잔금지급 전 확인
점	약정이행 점검팀	50호미만	◎	◎	◎	◎	◎
		50호~	◎	○ ○ ○ ◎	○ ○ ○ ◎	◎	◎

□ 신축 매입임대주택 시공 가이드라인 (사업자 셀프 체크리스트)

- 대지위치 :
- 층수(지상/지하) :

- 건축물 용도 :
- 세대수 :

322

연번	단계	분야	공종	자재	확인사항	확인결과
1	공통				■ 해당공사 특기시방서가 없을 경우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등을 준용하며, 시방서는 상호 보완을 하며,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1. 특기시방서 2.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3. LH 시방서	
2	공통				■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LH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LH 표준상세도를 참고한다.	
3	공통				■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모든 자재는 KS표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단, KS제품이 없는 품목은 단체표준 또는 KS규격과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4	공통				■ 현장여건에 따라 단계별 확인사항을 조정하여 확인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약정이행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공통				■ 사업자는 각 단계별 약정이행점검 시기 도래 7일 전까지 LH에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6	공통				■ 사업자는 LH에 제출한 착공도면(실시설계 수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공사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출한 착공도면과 현장 시공상태 상이(주요자재 상이 포함) 및 구조적 하자 등 부적합 사항 발견 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매매계약 체결 이후라도 부적합 사항 발견 시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7	공통				■ 사업자는 공사 시 시공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각 단계 약정이행점검 시 시공 가이드라인 확인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결과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매입약정 해제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8	공통				■ LH 또는 LH가 운영하는 약정이행점검팀의 약정이행점검 시 점검에 필요한 서류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9	공통				■ 약정이행점검 시 보완, 지적사항은 14일 이내 이행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0	공통				■ 사업자는 LH 또는 LH가 운영하는 약정이행점검팀과 감리자의 점검, 검사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품질 및 약정 상의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	
11	공통				■ LH 또는 LH가 운영하는 약정이행점검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 진행의 상황을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하여야 한다.	
12	공통				■ 파일기초의 경우 재하시험을 실시하고 1단계 점검결과 제출 시 재하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통				■ LH는 3단계 약정이행점검 결과 창호 주위 사춤불량, 조적시공 미흡 등으로 공사 품질확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기밀성능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기밀성능시험 결과 확인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붙임3. 건축물 기밀성능 시험방법 및 기준 참고]	
14	공통				■ 비상주 감리 대상인 경우 기초 및 각 층의 철근배근 검측을 하고 2단계 약정이행점검 시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4단계 약정이행점검 시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15	공통				■ 상주 감리 대상인 경우 2단계 약정이행점검 시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4단계 약정이행점검 시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16	공통				■ 주요 공사의 경우 동영상을 촬영하여 공사감리자 및 사업자 확인 후 3단계 약정이행점검 시 제출해야 한다. [붙임2. 신축매입임대주택 영상 촬영 부위 및 기준 참고]	

연번	단계	분야	공종	자재	확인사항	확인결과
17	공통				■ 사업자는 건축물 준공시점 초기안전점검(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건진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안전 점검)에 준하는 안전점검(용벽 포함) 후 "붙임6.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18	공통				■ 2단계 약정이행점검 시 "붙임1.주요 마감자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통				■ 4단계 약정이행점검 시 "붙임1. 주요 마감자재 사용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20	공통				■ 주요 마감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LH에서 요청 시 'Mock-up 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1	공통				■ 공사비연동형 적용 건축물은 'Mock-up 세대'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용하여야 하며, 마감재 품평회를 시행하여 주요 마감재를 선정한다.	
22	공통				■ 수도법 제33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준공 후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고 4단계 약정이행점검 시 제출하여야 한다.	
23	1단계	건축	기초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관계 확인하여야 한다.(경계복원측량성라도 확인하여 측량결과 불일치 시 반드시 치유한다.)	
24	1단계	건축	기초		■ 옹벽 도면 및 옹벽의 적정 이격거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m 이상의 옹벽으로부터 건축물 외곽까지 당해 옹벽의 높이만큼 이격 등)	
25	1단계	건축	기초		■ 흙막이 설치 시 흙막이 계측 관리를 하여야 한다.	
26	1단계	건축	기초		■ 지하수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수공법을 선정하고 집수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27	1단계	건축	기초		■ 기초규격 확인(피복두께, 배근간격 등)하고 기초철근의 겹침이음 시 용접을 지양한다.	
28	1단계	건축	기초		■ 기초 상부철근 양카 정착, 기초 내민 길이, 보강근 길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9	1단계	건축	기초		■ 집수정 설치위치, T/C 기초 시공, 안전시설물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0	1단계	건축	기초		■ 기둥 및 벽체 기초 내부 매립부 기둥 늑근(Hoop)및 수평근을 적정 배근하여야 한다.	
31	1단계	건축	기초		■ 엘리베이터 피트 주변 옹벽근 정착 확인 및 승강기 전용 집수정 및 배수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1단계	기계	옥외장비		■ 옥외 기초에 매립되는 배관에 대한 시공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매설깊이, 배관 부식방지 조치여부 등	
33	1단계	전기·정보통신	일반		■ 배선시 접지·전선 등은 KEC 규격을 준용하여야 한다.	
34	1단계	전기·정보통신	접지		■ 접지설비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저항값, KEC규격 준수여부)	
35	1단계	전기·정보통신	접지		■ 접지극의 매설깊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6	1단계	전기·정보통신	배관	일반	■ 전기(통신) 인입 계획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지중 인입, 맨홀(핸드홀) 사용, 방수처리 등	
37	1단계	전기·정보통신	배관	일반	■ 인입맨홀부터 구내용 정보통신장치가 설치된 공간까지 외부통신 사업자용 예비배관(HI 36C*6)을 추가하여야 한다.	
38	2단계	건축	철근콘크리트		■ 슬리브 관통 부위는 보강 철근을 시공하여야 한다.	
39	2단계	건축	철근콘크리트		■ 보 폐쇄형 배근, 전단보강근 폐쇄형 갈고리 시공을 하여야 한다.	
40	2단계	건축	철근콘크리트		■ 벽체 철근 배근 시 수평근·수직근 간격, 슬래브 정착 시공, 보강근, U-bar, 간격재를 시공하여야 한다.	

연번	단계	분야	공종	자재	확인사항	확인결과								
41	2단계	건축	철근콘크리트		■ 콘크리트 내벽(간막이벽)두께는 100mm(단배근 적용) 이상, 외벽두께는 200mm(복배근 적용)이상 시공하여야 한다. (단, 내벽이 내력벽인 경우 150mm(복배근 적용) 이상)									
42	2단계	건축	철근콘크리트		■ 계단 높이는 2,100mm 이상, 계단참, 계단너비(유효폭 1,200mm 이상)를 확보하여야 한다.									
43	2단계	건축	철근콘크리트		■ 개구부 인방보 설치 및 개구부 사인장 철근 보강하여야 한다.									
44	2단계	건축	철근콘크리트		■ 기계 각종 배관, 전기·통신 박스 주변에 사인장 보강 철근을 시공하여야 한다.									
45	2단계	건축	철근콘크리트		■ 각종 슬리브(환기배관, 에어컨슬리브, 연도, 전열교환기 덕트 등)는 매립 설치하여야 한다. (추후 타공 금지)									
46	2단계	건축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표면 평활도(시멘트 페이스트 제거, 웅이, 파임 등) 확인하고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47	2단계	건축	철근콘크리트		■ 재료분리 및 균열 등 골조 품질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8	2단계	건축	철근콘크리트		■ 자재반입구 후시공 부위 철근 보강 및 바닥 평활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9	2단계	건축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타이핀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50	2단계	건축	철근콘크리트		■ 편복도 유효폭 1,200mm 이상, 중복도 유효폭 1,800m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복도 내 우수선통 등 설치 시 해당 폭만큼 추가 유효폭 확보)									
51	2단계	건축	잡공사		■ 옥상에는 작업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작업용 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52	2단계	건축	방수		■ 지하구조물 외벽 방수는 외방수(점착겔-시트 복합방수, 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방수)로 시공하고 방수층 보호를 위해 THK13 PP 복합판넬 방수층 보호재를 시공(시공사진 등 제출)하여야 한다. (LH 건축 표준상세도 DA-83-041-1 참고) 다만, 외방수 시공이 곤란한 아래 구간에 한해 내방수 적용 가능(시공 전 협의 필요) (1) 대상구간 : ㉠ 흙막이-지하구조체 이격거리 1.5m 미만으로 외방수시공 협소구간 ㉡ 흙막이-지하외벽 합벽시공 구간 ㉢ 기초 단차 발생 구간 ㉣ 기타 현장여건에 따라 외방수 시공이 곤란한 구간 (2) 내방수 변경시 지하공간별 내방수 적용기준 <table><tr><th>구 분</th><th>적용공법</th></tr><tr><td>전가발전기실, 동산실, 헬룸</td><td>시멘트 온입 롤리머계 방수 + 벽체배수판</td></tr><tr><td>지하주차장</td><td>시멘트 액체방수 + 벽체배수판</td></tr><tr><td>PIT, 물탱크실, 펌프실, DA</td><td>시멘트 액체방수 + 보호몰탈</td></tr></table> * 지하층 전기실/발전기실 및 헬룸 등의 벽체방수도 위 기준을 준용한다.	구 분	적용공법	전가발전기실, 동산실, 헬룸	시멘트 온입 롤리머계 방수 + 벽체배수판	지하주차장	시멘트 액체방수 + 벽체배수판	PIT, 물탱크실, 펌프실, DA	시멘트 액체방수 + 보호몰탈	
구 분	적용공법													
전가발전기실, 동산실, 헬룸	시멘트 온입 롤리머계 방수 + 벽체배수판													
지하주차장	시멘트 액체방수 + 벽체배수판													
PIT, 물탱크실, 펌프실, DA	시멘트 액체방수 + 보호몰탈													
53	2단계	건축	단열, 결로		■ 단열재 상부 철근 배근 및 고임대 설치로 인한 단열재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4	2단계	건축	단열, 결로		■ 단열재는 시멘트 페이스트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고정철물은 제거하고 파손부위와 틈새는 밀실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55	2단계	건축	외부마감		■ 외장재(석재, 벽돌)의 탈락 및 인발을 고려한 구조검토서를 확인한다.									
56	2단계	건축	외부마감		■ 외장재 시공 전 단열재 고정상태를 확인(고정핀 설치 간격 등)한다.									
57	2단계	건축	외부마감		■ 외장재(벽돌) 시공 시 개구부 보강철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58	2단계	건축	외부마감		■ 외장재(석재, 벽돌 등) 수평·수직조인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59	2단계	건축	외부마감		■ 외장재(석재, 벽돌 등) 설치로 인한 단열재 파손부위가 있는 경우 보수하여야 한다.									
60	2단계	기계	슬리브		■ 급수, 오·배수 입상 관통슬리브 위치는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연번	단계	분야	공종	자재	확인사항	확인결과
61	2단계	기계	슬리브		■ 세대 내 보일러 연도와 개구부 사이 이격거리는 600mm 이상, 세대 간 보일러 연도와 연도 사이 이격거리는 300m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62	2단계	기계	슬리브		■ 화장실·주방·발코니 등 PVC 슬리브 위치, 규격, 고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3	2단계	기계	슬리브		■ 방화댐퍼 슬리브 위치 및 고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4	2단계	기계	배관		■ 급수, 오배수 배관 PD위치 및 배관시공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배관 매립여부, 고정상태 등)	
65	2단계	기계	배관		■ 급수·급탕 이중배관(PB+CD)을 적용하고, 배관 연결부속 매립은 금지한다.	
66	2단계	기계	배관		■ 급수·급탕분배기에서 각 수전 및 보일러까지 1:1 방식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67	2단계	기계	배관		■ 욕실 2개소 이상인 경우 SUB 분배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68	2단계	기계	배관		■ 세탁용수전은 적정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바닥 마감면 +1,300mm 내외, 세탁기 후면 설치 시 +1,500mm 내외)	
69	2단계	기계	배관		■ 세탁용수전 및 손빨래수전 설치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냉수, 온수 가로폭 지의 이격거리 150~200mm)	
70	2단계	기계	배관		■ 옥상 배수 통기관에 지수판 슬리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71	2단계	기계	배관		■ 에어컨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배관의 배열, 고정상태,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노출부위 10mm, 매립부위 5mm) 설치 등	
72	2단계	기계	배관		■ 보일러 하부 연결 배관 시 이중관을 인출하여야 한다. (슬라브 및 벽체 내 이음 부속 매립 금지)	
73	2단계	기계	배관		■ 온수분배기 위치(싱크대 하부)를 확인하고, 난방공급/환수측 이중관을 인출하여야 한다. (슬라브 및 벽체 내 이음 부속 매립 금지)	
74	2단계	기계	배관		■ 에어컨 냉매배관의 기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압력계 설치 후 누설 여부 확인) - 기밀테스트 결과 제출 (1차 : 기밀시험 압력 3.8MPa로 질소 가압하여 24시간 누설 없음) (2차 : 1.47MPa 이상의 압력으로 입주시까지 유지)	
75	2단계	기계	배관		■ 배관 공사후 배관보호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배관말단 보양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76	2단계	전기·정보통신	일반		■ 모든 배관은 기계설비와 간섭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누수가 우려되는 배관보다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77	2단계	전기·정보통신	일반		■ 배관공사 후 결로방지를 위해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보양 등)를 취하여야 한다.	
78	2단계	전기·정보통신	일반		■ 각 실별 에어컨 설치 계획(냉매배관, 슬리브, 드레인 배관, 콘센트, 실외기 거치공간 확보)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79	2단계	전기·정보통신	일반		■ 근린생활시설의 전력량계는 개별 설치하여야 한다.	
80	2단계	전기·정보통신	접지		■ 건축물 접지도체와 철근 접속 클램프의 볼트 체결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81	2단계	전기·정보통신	접지		■ 접지저항값 유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토공 정리시 탈락여부)	
82	2단계	전기·정보통신	슬래브배관		■ 함 및 박스의 도장상태, 수직수평, 설치위치 및 배관 인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83	2단계	전기·정보통신	슬래브배관		■ 상하부 철근사이 배관 고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84	2단계	전기·정보통신	슬래브배관		■ 밀집배관부위의 배관 상호간 이격거리(30mm 이상)를 유지하여야 한다.	
85	2단계	전기·정보통신	슬래브배관		■ 배관 상호간, 배관과 박스의 연결부의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연번	단계	분야	공종	자재	확인사항	확인결과
86	2단계	전기·정보통신	슬래브배관		■ 배관 막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87	2단계	전기·정보통신	슬래브배관		■ 박스 및 함의 보양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88	2단계	전기·정보통신	배관	일반	■ 수전 인입관로 외벽 관통부위 수막방지 동봉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9	2단계	전기·정보통신	배관	일반	■ 세대별 전기·통신 배관 설치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90	2단계	전기·정보통신	배관	일반	■ 최상층 전장 배관은 반자 내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	
91	2단계	전기·정보통신	배관	노출	■ 노출배관(주차장, 욕실, 보일러실, 전장 등)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준수하여 적절한 시공방법을 선정 및 설치하여야 한다. * 은폐된 장소에 합성수지관 사용 불가	
92	2단계	전기·정보통신	함 설치	일반	■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의 위치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은폐된 장소 설치불가, 단 통신단자함의 경우 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 신발장 예외 적용 가능)	
93	2단계	전기·정보통신	함 설치	계량기함	■ 계량기함 전선 접속부위의 적정 슬리브 사용 및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94	2단계	전기·정보통신	함 설치	전화약전단자함	■ 인입케이블 주위 및 예비공 코킹 충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95	2단계	전기·정보통신	함 설치	일반	■ 함류의 휨방지를 위하여 목재, 철판 등을 통한 보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6	2단계	전기·정보통신	배선	세대배선	■ 단위세대별 배선기구 박스 시공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97	2단계	전기·정보통신	배선	세대배선	■ 결로방지를 위한 실링 시공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측세대 외벽측 콘센트, 스위치 설치 불가)	
98	2단계	전기·정보통신	배선	세대배선	■ 배관내 전선 접속은 지양하여야 한다.	
99	2단계	전기·정보통신	배선	세대배선	■ 전기 인입구 설치위치의 적정성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100	2단계	전기·정보통신	배선	세대배선	■ 주방 전기콘센트 위치의 적정성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하며, 개수대와 인접한 경우에는 방우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01	2단계	전기·정보통신	배선	세대배선	■ 주방 전기콘센트는 수전과 가스밸브로부터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50mm 이상)	
102	2단계	전기·정보통신	배선	세대배선	■ 에어컨용 콘센트는 별도 전용회로로 구성하고 거실(스탠드형) 및 안방(벽걸이형)에 1개소씩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103	2단계	전기·정보통신	배선	세대배선	■ 투룸 이상일 경우, 현관 벽체에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입주자 만족도 개선)	
104	2단계	전기·정보통신	배선	세대배선	■ 발코니 내 CO감지기 전원용 콘센트는 벽부시공하여야 한다.(높이 2,000mm)	
105	2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구설치	배선기구	■ 전선의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중간에서 분기 접속되는 콘센트는 리드선을 이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106	2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구설치	배선기구	■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107	2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구설치	배선기구	■ 콘센트 및 통신수구 설치위치 및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108	2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구설치	배선기구	■ 대용량 부하는 전용회로로 구성하여야 한다.(전기쿠팡, 에어컨 등)	
109	2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구설치	세대단말기	■ 설치 높이 및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110	2단계	전기·정보통신	소방전기		■ 부위별 적정 감지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감지기는 공사 중 먼지 등 유입방지를 위해 보호캡을 유지한다.	
111	2단계	전기·정보통신	승강기		■ 승강기 제어반과 국선단자함(통신) 사이에 인터넷 연결을 위한 공배관(CD-P 16mm 이상)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2	3단계	건축	방수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 방수공사 시 적정 높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욕실 조적부위 방수높이 1,200mm이상, 샤워공간은 1,800mm 이상, 조인트 및 수전부 방수 보강)	

연번	단계	분야	공종	자재	확인사항	확인결과
113	3단계	건축	방수		■ 옥상, 옥탑 및 발코니 벽체 방수 감아올림 높이(300mm), 방수 겹침이음 길이(100mm)를 준수하여야 한다.	
114	3단계	건축	방수		■ 옥실, 다용도실, 발코니, 베란다 등 방수공사 후 담수시험(4단계 약정이행점 검 시 시험사진 등 제출)을 하여야 하고, 담수시험 시 구배확보 및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5	3단계	건축	방수		■ 드레인 주위 및 옥실 벽·바닥 접합부는 우레탄 도막방수(비노출)로 방수보강하여야 한다.	
116	3단계	건축	방수		■ 지붕층 외부 노출 수직부위는 착색아연도강판으로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117	3단계	건축	방수		■ 지하주차장 최하층 바닥은 방수 없이 바닥 배수판(THK45) 위 섬유보강 무근 콘크리트(THK140)로 시공(시공사진 등 제출)하여야 한다. (LH 건축 표준상세도 DA-10-104 참고) 단, 지하수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바닥방수, 영구배수공법 및 락양커 등 부상방지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지하 최하층 전기실/발전기실, 헬룸 등의 바닥방수도 위 기준을 준용한다.	
118	3단계	건축	방수		■ PIT 바닥 방수는 시멘트 액체방수로 시공하여야 한다.	
119	3단계	건축	방수		■ 지하주차장 중간층 바닥은 하부층으로의 누수 방지를 위해 시트방수 위 섬유보강 무근콘크리트(THK140)로 시공(시공사진 등 제출)하여야 한다. (LH 건축 표준상세도 DA-10-103 참고)	
120	3단계	건축	방수		■ 지하주차장 경사로 (램프) 바닥은 시멘트 액체방수 위 섬유보강 무근콘크리트(THK100)로 시공(시공사진 등 제출)하여야 한다.	
121	3단계	건축	방수		■ 옥상 조경에는 방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방근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122	3단계	건축	단열, 결로		■ 단열은 단열계획도, 설계도면에 따라 단열재의 등급, 규격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하며, 단열재의 누락, 파손, 틈새가 있어서는 안된다.	
123	3단계	건축	단열, 결로		■ 비난방 공간(복도, 발코니 등)에 면하는 옹벽, 천장 슬래브 및 최상층 내단열로 인해 발생되는 열교발생 부위에는 결로방지재를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부위 시멘트 페이스트 제거)	
124	3단계	건축	단열, 결로		■ 화재확산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벽체, 보 하부 측면 등 포함)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로 시공하여야 한다.	
125	3단계	건축	단열, 결로		■ 건물 전체가 내단열인 경우 발코니 벽체 및 천장 에 단열재(결로저감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대피공간, 실외기실 제외) - 벽체(외기 인접 3면 벽체) : THK30(1,2구역) 또는 THK20(3구역) 비드법 발포폴리스티렌(2중2호)+THK4.5 CRC 보드+내부수성페인트 - 천장 (전체) : THK15 압출법 발포폴리스티렌(1호)(콘크리트 매립시공)+THK9.5 일반 석고보드+내부수성페인트 (단, 세탁기실 별도 구획 시 발코니 천장 마감은 PVC 천장재 적용하고, 환기를 위한 창호 또는 환풍기(정풍압)을 설치한다.) * 구역 (1,2,3) 구분은 LH 표준상세도 DA-60-101 참고 * [자료실 업로드-1. LH 표준상세도 DA-60-101~119 참고]	
126	3단계	건축	창호		■ 세대현관문은 유효폭 900m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127	3단계	건축	창호		■ 세탁실 출입 창호는 문짝이 부착된 상태에서 세탁기 반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710m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128	3단계	건축	창호		■ 창호는 상부 및 좌·우 여유폭(사출부위) 이 과다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고정 상태 확인 및 누수방지를 위한 창문틀 주위 사춤(밀틀: 방수물탈, 기타: 우레탄폼) 시공 후 실링재로 마감한다.	
129	3단계	건축	창호		■ 외부 창호 하부는 구배를 확보하고, 실리콘 시공 전 바탕청소를 완료한 후 밀실하게 실리콘 시공을 하여야 한다.	
130	3단계	건축	창호		■ 외부 창호 상부 및 보 끝단 등에 물끊기 시공을 하여야 한다.	

연번	단계	분야	공종	자재	확인사항	확인결과
131	3단계	건축		완충재	■ 바닥 시공시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32	3단계	건축		완충재	■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적용 시 경량충격음 1등급 , 중량충격음 2등급 이상의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133	3단계	건축		완충재	■ 측면 완충재는 두께 10mm 이상의 자재를 시공하여야 한다.	
134	3단계	건축		완충재	■ 비확장 발코니 실내측(거실/침실접합면), 벽면과 문틀 접합부위, 욕실마블 주위 측면완충재는 밀착시공(OPP테이프) 하여야 한다.	
135	3단계	건축		완충재	■ 문틀하부 고임대 및 분배기, 배관 부위 등은 측면완충재로 완전히 감싼 후 OPP테이프 2회 이상 겹쳐 부착하여야 한다.	
136	3단계	건축		완충재	■ 바닥완충재 이음 및 재단부위를 OPP 테이프로 밀실하게 부착하고, 밀착 시공하여야 한다.	
137	3단계	건축	조적		■ 조적벽체는 상부 슬래브까지 밀실하게 사춤하여야 한다.	
138	3단계	건축	조적		■ 전기, 기계 배관 설치 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충전하여야 한다.	
139	3단계	건축	조적		■ 조적벽 개구부의 인방은 양측 벽에 200mm 이상 결침 시공하여야 한다. * 인방 연장시공이 곤란할 경우 L자 형강을 앵커 고정 후 인방 설치	
140	3단계	건축	미장		■ 조적벽체는 천장 마감위 슬래브까지 미장을 하여야 한다.	
141	3단계	건축	잡공사		■ 옥상 드레인 은 낙엽 등이 쌓여 막히지 않도록 하고, 드레인 방향으로 구배 (1/50~1/150) 를 확보하여야 한다.	
142	3단계	건축	잡공사		■ 옥상 조경은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과 건축물의 하부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수 및 배수시설(드레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43	3단계	기계	배관		■ 난방배관(코일피치 200mm 적용)은 각 실별로 Zonning(회오리방식)하여야 한다. - 2Room 이상은 실별온도제어시스템 적용	
144	3단계	기계	배관		■ 난방코일 공급관은 5mm 보온재(온수분배기로부터 1m 이상)를 시공하여야 한다.	
145	3단계	기계	배관		■ 당해층 배기방식의 경우 배기팬 및 레인지후드의 사양, 배관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외벽으로부터 1.5m 10T 보온, 배관길이의 적절성 등	
146	3단계	전기·정보통신	일반		■ 조명기구 KS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한 LED등기구로 설치하여야 한다.	
147	3단계	전기·정보통신	일반		■ (해당 시) 전기실·발전기실 설치 계획 및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크기, 위치 DA 등)	
148	3단계	전기·정보통신	접지		■ 각종 패드 설치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공청·위성안테나 별도 패드 설치, 안테나패드 기초 시공, 지선 또는 지지대 설치, 돌침 , 전기실)	
149	3단계	전기·정보통신	함 설치	일반	■ 전용부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의 내측 들뜸부위가 없도록 사춤하여야 한다.	
150	3단계	전기·정보통신	배선	세대배선	■ 용도별 적합전선 입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색상 및 굵기, KEC기준)	
151	3단계	전기·정보통신	배선	세대배선	■ 통신용 통합단자함 내부에는 2구형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인터넷장비 전원공급용)	
152	3단계	전기·정보통신	배선	세대배선	■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153	3단계	전기·정보통신	배선	세대배선	■ 입선 후 보양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54	3단계	전기·정보통신	배선	세대배선	■ 배관 전자적 평형유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동일관내 동일회로 입선)	

연번	단계	분야	공종	자재	확인사항	확인결과
155	3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구설치	배선기구	주책용차단기의 적절한 차단기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차단기와 분기차단기는 순시트립 전류(C,D형)에 따라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주차단기 D형, 분기차단기: C형 이상 동작 특성 고려하여 선정)	
156	4단계	건축		완충재	사업승인 대상 주택은 4단계 점검 시 바닥충격음 사후인증 결과표를 제출한다.	
157	4단계	건축	창호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58	4단계	건축	창호		욕실문 개폐시 양변기와 간섭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59	4단계	건축	창호		중복도에는 환기창을 설치하고, 외기에 면한 모든 창(실외기실 시스템 루버 포함)은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층 및 공용부에 면한 창은 방범용 방충망 설치) - 창호는 개폐방식, 개폐각도 등을 확인하여 사용 시 추락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60	4단계	건축	창호		방화유리문은 유리, 틀, 부속철물 일체 방화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비차열 1시간)	
161	4단계	건축	창호		세대현관문 및 옥상출입문 방화 성능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방화판 및 난연가스켓 설치)	
162	4단계	건축	창호		동 출입문(자동출입문)규격 준수하여야 한다. (유호폭 900mm 이상, 유호높이 2,200mm 이상)	
163	4단계	건축	창호		세대 내 창호에는 스토퍼[이중창(상·하 총 8개, 단창 상·하 총 4개)], 레버형[자동잠금형(비확장 발코니 내부창은 제외)]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164	4단계	건축	창호		문짝 개폐 시 도어록과 벽체, 가구문짝 등과의 충격 완화를 위해 스토퍼 또는 기타 완충재를 시공하여야 한다.	
165	4단계	건축	창호		최고층수 16층 이상 주택과 30호 이상의 오피스텔은 전 세대 실내 출입문에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66	4단계	건축	미장		에어컨 배수구, 바닥 등 틈새 코킹을 하여야 한다.	
167	4단계	건축	미장		계단 및 계단참 옆면은 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168	4단계	건축	수장		걸레받이는 견고하게 부착하고, 접합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링 시공하여야 한다.	
169	4단계	건축	수장		강화합판마루 시공 시 신축·팽창을 고려하여 걸레받이 부위에서 이격 시공한다.	
170	4단계	건축	수장		바탕면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71	4단계	건축	수장		도배공사시 모서리 돌레가 들뜨지 않도록 하고 변색 및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2	4단계	건축	수장		정배지 이음매가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173	4단계	건축	타일		현관 바닥 높이는 거실 바닥 마감면에서 30mm 이상 단 차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174	4단계	건축	타일		욕실(60mm 이상) 및 발코니(30mm 이상) 낮춤 시공을 하여야 한다.	
175	4단계	건축	타일		샤워부스 바닥은 욕실 바닥기준 10mm 낮춤 시공하여야 한다.	
176	4단계	건축	타일		타일 들뜸 및 균열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7	4단계	건축	타일		모서리에서 온장타일과 조각타일 만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8	4단계	건축	타일		타일 줄눈 마감상태(오염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연번	단계	분야	공종	자재	확인사항	확인결과
179	4단계	건축	도장		■ EV홀, 계단실, 복도 등 공용부위 도장 마감기준(다채무늬, 수성, 낙방 등)이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180	4단계	건축	도장		■ 도장면 변색, 들뜸, 흠집, 거품 등 오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81	4단계	건축	가구		■ 주방가구 설치(조리대 치수, 냉장고 위치 등) 및 고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82	4단계	건축	가구		■ 약정이행점검 2 단계 시 제출된 주요 마감자재 제안서에 따른 빌트인 가전, 가구를 설치한다.	
183	4단계	건축	가구		■ 가구에 사용되는 이동선반은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의 선반지지구를 사용하고, 선반지지구가 몸체에서 쉽게 빠지지 않아야 하며, 유리선반의 선반지지구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의 고무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84	4단계	건축	가구		■ 주방가구 상판 물흘림 방지턱 시공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185	4단계	건축	가구		■ 주방가구 시공 시 가열대 설치부위는 뒷선반을 설치하지 않는다.	
186	4단계	건축	가구		■ 수납가구, 신발장은 전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 벽체 등에 고정하여야 한다.	
187	4단계	건축	가구		■ 신발장 깊이는 문짝 포함 400m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188	4단계	건축	가구		■ 침실, 다용도실 및 신발장, 주방가구 등 문짝과 벽체 간섭 방지해야 한다.(스토퍼 설치)	
189	4단계	건축	가구		■ 가스대와 벽체 이격거리는 타일벽면은 150mm, 가구측판 마감은 300m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190	4단계	건축	잡공사		■ 우편함은 세대용(세대수 이상), 반송용, 폐건전지함으로 구분하고, 바닥 마감선에서 420mm 이상, 1,700m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191	4단계	건축	잡공사		■ 주차공간 유효 천장고는 2,100mm 이상, 차량 통로의 유효 천장고는 2,300mm 이상 확보하고 진입제한 높이를 표시한다. (단, 택배차량의 진입을 고려할 경우 차량통로 유효 천장고를 2,700mm 이상으로 한다.)	
192	4단계	건축	잡공사		■ 차량 통행 인접부위 기둥, 벽체 등의 코너부위에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93	4단계	건축	잡공사		■ 모든 안전난간대(계단 난간은 제외)는 바닥 마감으로부터 높이 1,200mm 이상 확보해야 한다.(보강대설치 등 안전난간 흔들림 방지 및 방청성능 확보)	
194	4단계	건축	잡공사		■ 단위세대 실외기는 각 세대 별로 설치하거나 복수 세대의 실외기실을 통합할 경우는 당해 층 공용부에서 출입가능한 곳에 실외기 공간을 확보하고, 방출수 처리를 위한 배수드레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95	4단계	건축	잡공사		■ 실외기를 공용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실외기 완충패드(H=100mm) 시공 시 바닥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96	4단계	건축	잡공사		■ 옥상 출입문 상부 캐노피를 설치하고, 비상등과 옥상출입문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197	4단계	건축	잡공사		■ 옥탑점검사다리(바닥에서 1,040mm 이격)를 설치 해야하고, 높이 2,000mm 이상의 옥탑사다리는 추락방지대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98	4단계	건축	잡공사		■ 지하주차장 차량 통행 확인을 위한 반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99	4단계	건축	잡공사		■ 주차구획마다 카스토퍼(2EA)를 설치한다. - 카스토퍼 길이 900mm이상인 경우 1EA 설치가능하나, 장애인용 주차구획은 2EA 설치	
200	4단계	건축	잡공사		■ 지하주차장 벽면(혹은 지하 이중벽체패널) 및 바닥에 차량 및 동호 유도사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	4단계	건축	유리		■ 유리는 단열계획도, 창호상세도에 따라 지정된 유리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연번	단계	분야	공종	자재	확인사항	확인결과
202	4단계	건축	유리		■ 유리 설치 완료 후 유리 고정용 실링을 시공하여야 한다.	
203	4단계	건축	유리		■ 샤워공간은 안전유리(두께 8.76이상의 접합유리 II-1 혹은 II-2)를 적용하여야 한다.	
204	4단계	건축	지붕		■ 평지붕 누름콘크리트에 신축줄눈(2,000mm 이하) 및 코킹 시공하여야 한다.	
205	4단계	건축	흡통		■ 선흡통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6	4단계	건축	흡통		■ 우수관 선흡통과 우수트렌치는 직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07	4단계	기계	배관		■ 시상수 인입 관경 확인하고, 동시 사용율(30%)를 고려하여 세대 적정 수압(0.25Mpa(2.5kg/cm ²))을 확보하여야 한다.	
208	4단계	기계	배관		■ 원활한 배수를 위한 오·배수관 구배를 확보하여야 한다.	
209	4단계	기계	배관		■ 공용부 배관 보온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보온재 규격, 알루미늄밴드 및 배관별 인식표 등 설치여부 - 비보온 구간(주차장 스프링클러 2차측, 펌프실 성능시험배관 등) 은분 등 도장마감 상태 확인	
210	4단계	기계	배관		■ 공용부 부위별 발열선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배관보온 전 발열선 설치사진 및 작동상태 사진 제출 필요 - 발열선 정상작동 상태, 온도센서, 작동표시등 설치여부 등 - 제어반 단열 조치 및 제어반 내 발열선 구획도 부착 확인	
211	4단계	기계	배관		■ 세대내 배관 설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거실·침실·주방 천장 에 급수 및 오배수 배관 설치 금지	
212	4단계	기계	배관		■ 급수·급탕 및 온수분배기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싱크수전 무게추와 분배기 간섭 여부 - 에어콕과 별도의 퇴수배관 설치 여부	
213	4단계	기계	배관		■ 급수·급탕분배기에 용도별 스티커(또는 표지판)를 부착하고, 하부 배관에 실링캡 및 소음방지링을 설치하여야 한다.	
214	4단계	기계	배관		■ 소화배관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한다.(소화전, 소화배관, 스프링클러 등)	
215	4단계	기계	배관		■ 필로티(천장 및 PD내) 점검구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점검구 재질 및 단열재(20T) 부착상태	
216	4단계	기계	배관		■ 전용부 및 공용부 오배수관에 대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한 개소에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필로티 천장 오배수 수직관 주위 청소구 추가 확보	
217	4단계	기계	배관		■ 옥상 통기관 인출상태(F.L+600) 및 스텐망 설치상태(메시8)를 확인하여야 한다.	
218	4단계	기계	배관		■ 온수분배기 실구획별(방1,방2,거실 등)로 인식표 및 난방구획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 1Room인 경우 제외	
219	4단계	기계	배관		■ 보일러 하부배관 보온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중부 1,2지역, 남부지역 1층 및 필로티 직상층 발열선 설치여부 - 지역별 시·군·구 목록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참조	
220	4단계	기계	배관		■ 보일러 하부배관 인식표, 볼밸브 설치 및 응축수 드레인 마감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21	4단계	기계	배관		■ 보일러 설치완료 후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 시운전일지 제출 필요	
222	4단계	기계	배관		■ 오배수관 통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담수 테스트 후 통수하여 확인)	
223	4단계	기계	배관		■ 외부 우수관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재질, 집수정 또는 1층 우수 트렌치와 직접연결, 원활한 배수 상태 등	

연번	단계	분야	공종	자재	확인사항	확인결과
224	4단계	기계	배관		■ 세대내 부위별 PD 점검구 설치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25	4단계	기계	배관		■ 에어컨 응축수 드레인관 시공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매립 금지, 당해층 발코니 유도)	
226	4단계	기계	배관		■ 수전류 고정상태,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싱크대 내부 누수방지용 상·하부 패킹 및 싱크대 보강판 설치	
227	4단계	기계	위생기구 및 장비설치		■ 각종 소방설비 위치 및 종류(수신기와 연계 설치)의 적정성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228	4단계	기계	위생기구 및 장비설치		■ 계량기함 위치 적정성 및 함내부 동파방지를 위한 조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보온용 스티로폼 및 보온솜 충전 등)	
229	4단계	기계	위생기구 및 장비설치		■ 욕실, 다용도실, 오·배수 배관 설치상태, 각종 배관 말단 및 배수트랩 등 보양 상태 확인하여야 한다.	
230	4단계	기계	위생기구 및 장비설치		■ 필터티 상부에 분말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출입문, 재활용 분리수거장 상부) - 필터티 스프링클러 설치시 제외	
231	4단계	기계	위생기구 및 장비설치		■ 빌트인 가전(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에어컨 리모컨 분실방지를 위해 공간 활용에 제약이 없는 에어컨 측면 등에 리모컨 거치대를 설치한다.	
232	4단계	기계	위생기구 및 장비설치		■ 에어컨 실외기 공용부분 집합설치시 실외기 사이 간섭여부, 점검가능한 공간 확보, 소음 및 진동방지 대책, 호수 표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33	4단계	기계	위생기구 및 장비설치		■ 전열교환기 전동댐퍼(MD)와 역풍방지댐퍼(B.D.D)를 설치하여야 한다.	
234	4단계	기계	위생기구 및 장비설치		■ 복도 계량기함에 호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235	4단계	기계	위생기구 및 장비설치		■ 공용부(지하주차장, 펌프실 및 기계실 등) 주요장비류 마감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운전 시행여부 확인(시운전 일지 제출 필요)	
236	4단계	기계	위생기구 및 장비설치		■ 공용부 주요 장비 및 밸브류 명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펌프류, 팬류, 정수위밸브, 소화밸브 등	
237	4단계	기계	위생기구 및 장비설치		■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관제점 적정성, 무정전 전원장치(UPS) 설치여부 등	
238	4단계	기계	위생기구 및 장비설치		■ 도기류 마감상태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코킹마감, 백시멘트 충전상태 등	
239	4단계	기계	위생기구 및 장비설치		■ 보일러 연도의 구배, 연결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덴싱 : 2~3도 상향구배	
240	4단계	기계	위생기구 및 장비설치		■ 욕실장(슬라이딩 2Door) 고정상태 및 자동댐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욕실장 내부에서 PS 시공결이에 STS고정못 설치(2개소 이상)하여 고정, 2면 이상 코킹 처리(단, 샤워부스 등이 인접하여 불가 시 1면이상) - 화장경에 비산 방지를 위한 보호필름 부착 - "독성있는 세제 사용금지" 경고스티커 부착	
241	4단계	기계	위생기구 및 장비설치		■ 욕실 악세사리류 재질은 STS304 또는 내식성 금속의 니켈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242	4단계	기계	위생기구 및 장비설치		■ 욕실팬 시공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고정압 정풍량팬, 전동댐퍼(MD), 플렉시블관 규격 및 고정상태(스텐밴드) 등	
243	4단계	기계	위생기구 및 장비설치		■ 레인지후드 시공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침니형, 전동댐퍼(MD), 플렉시블관 규격 및 고정상태(스텐밴드) 등 - 레인지후드와 화기의 이격거리 준수 여부(650mm 이상)	

연번	단계	분야	공종	자재	확인사항	확인결과
244	4단계	기계	옥외장비		■ 저수조 설치 시 침수방지를 위해 정수위밸브(전자식)와 기계식 수위조절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45	4단계	기계	가스		■ 주방 가스 조절 밸브 위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46	4단계	기계	가스		■ 가스계량기(직독식 또는 원격식) 시공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설치높이(F.L+1,600~2,000mm) 준수 여부 - 외부 집합설치시 주차위치 및 보행통로 간섭여부, 호별 구분명패 부착 등	
247	4단계	기계	가스		■ 가스배관 이음부(용접 이음부 제외)와 전기콘센트 및 화기의 이격거리(150mm 이상)를 준수하여야 한다.	
248	4단계	기계	가스		■ 방법이 우려되는 가스배관에는 방법커버 또는 가시관을 시공하여야 한다.	
249	4단계	기계	가스		■ 가스 라인별 배관경을 확인하여야 한다.	
250	4단계	기계	가스		■ 가스라인과 함류(계량기, 지시부, 우수드레인등)는 겹침시공하지 않는다.	
251	4단계	기계	공기조화		■ 최상층 무동력흡출기 위치 및 높이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52	4단계	기계	공기조화		■ 환기설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주차장, 기계실, MDF실, 방재실, 전기실 등)	
253	4단계	기계	위생기구 및 장비설치		■ 전열교환기 미설치 지구는 드레스룸에 별도의 배기팬을 설치하여야 한다. (욕실 배기팬 경용 금지)	
254	4단계	기계	슬리브		■ 전열교환기 디퓨저 위치 및 개수, 덕트 재질 및 고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급배기구간 이격거리 1,500mm 준수 또는 급배기구 90도 이상 둔각 설치, 급기구 주변 배기관 및 연도 이격거리 준수)	
255	4단계	전기·정보통신	일반		■ 각 분전반 판넬에 용도별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56	4단계	전기·정보통신	일반		■ 수배전반, 발전기, MCC 제어반 PAD의 적정 높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57	4단계	전기·정보통신	일반		■ 무인택배보관함의 전원 인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58	4단계	전기·정보통신	일반		■ 방재실내 관리PC의 감시 및 제어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59	4단계	전기·정보통신	일반		■ 수배전반, 발전기, EV 등 주요 장비류의 마감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60	4단계	전기·정보통신	일반		■ 보일러 전원케이블 등 정리정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61	4단계	전기·정보통신	일반		■ (옥외)급수 발열선 유니트컨트롤(온도제어 열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262	4단계	전기·정보통신	일반		■ 분전반, 제어반, 맨홀 등은 케이블 배선 및 결선 후 청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63	4단계	전기·정보통신	접지		■ 각종 접지선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64	4단계	전기·정보통신	접지		■ 주접지단자와 접지도체, 보호도체(PE)의 연결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65	4단계	전기·정보통신	슬래브배관		■ EPS/TPS 입상슬리브 설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66	4단계	전기·정보통신	함 설치	일반	■ 방송장치함, 공용분전반, 국선단자함 등은 호별, 용도별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267	4단계	전기·정보통신	함 설치	일반	■ 모든 분전반 내에 결선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268	4단계	전기·정보통신	함 설치	세대분전반	■ 세대분전반 차단기 규격의 적정성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269	4단계	전기·정보통신	함 설치	세대분전반	■ 세대분전반 내부 충전부의 절연 및 방호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70	4단계	전기·정보통신	함 설치	세대분전반	■ 세대분전반 내부 기기 고정, 전선 접속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71	4단계	전기·정보통신	함 설치	세대분전반	■ 커버의 개폐 및 회로도 부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72	4단계	전기·정보통신	함 설치	세대분전반	■ 커버의 수직수평 및 고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연번	단계	분야	공종	자재	확인사항	확인결과
273	4단계	전기·정보통신	함 설치	세대분전반	■ 세대분전반 내부 접지단자의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74	4단계	전기·정보통신	함 설치	계량기함	■ 통합계량기함은 집합형(세대별, 공용별 분리)으로 설치하고, 벽체 매입 시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75	4단계	전기·정보통신	함 설치	계량기함	■ 계량기함 접속부위의 절연테이핑 처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76	4단계	전기·정보통신	함 설치	계량기함	■ 계량기함 세대인입 배관부위의 결로방지 조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77	4단계	전기·정보통신	함 설치	계량기함	■ 계량기함 수직수평 상태 및 취부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벽면 밀착상태, 나사고정, 명판취부)	
278	4단계	전기·정보통신	배선	세대배선	■ 욕실, 주방, 세탁실 등 습기가 많은 장소의 경우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 또는 전용회로 구성 후 세대분전함 내 고감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79	4단계	전기·정보통신	배선	세대배선	■ 강전류전선과 약전류전선의 절연상태에 따른 이격거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280	4단계	전기·정보통신	배선	세대배선	■ 세대간 상호 연결되는 배관의 양측 말단은 방음을 위하여 스펀지 또는 기타 방음효과가 있는 재료로 충진하여야 한다.(전화, 방송, 인터넷 등)	
281	4단계	전기·정보통신	배선	세대배선	■ 함 내 전선 여장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82	4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구설치	배선기구	■ 용도별 적정기구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83	4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구설치	배선기구	■ 조명기구 배치에 따른 점멸순서를 확인하여야 한다.(연용 스위치)	
284	4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구설치	배선기구	■ 기구 주위 도배지 훼손여부, 석고따기(수성펜 사용금지) 및 주위 마감상태(석고보드 충전)를 확인하여야 한다.	
285	4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구설치	조명기구	■ 장소별 적정 등기구 취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86	4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구설치	조명기구	■ 등기구 청소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오염여부)	
287	4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구설치	조명기구	■ 등기구 고정상태 및 점등상태 확인하여야 한다.	
288	4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구설치	조명기구	■ LED 패널이 3개 이상인 조명기구는 숨음 제어가 가능하도록 2회로 구성 및 결선 시 접지하여야 한다.	
289	4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구설치	조명기구	■ 발코니 조명기구는 빨래 건조대와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벽부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90	4단계	전기·정보통신	소방전기		■ 소방기기 및 기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91	4단계	전기·정보통신	소방전기		■ 각종 감지기의 상전 인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단독경보형 제외)	
292	4단계	전기·정보통신	소방전기		■ 소방시설법 및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하여 단독경보형(배터리 : 리튬전지, 교환주기: 10년)감지기 및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93	4단계	전기·정보통신	소방전기		■ 수신반 설치시, 모든 감지기와 수신반의 연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94	4단계	전기·정보통신	소방전기		■ 종단저항 설치의 적정성과 스틱커 부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95	4단계	전기·정보통신	소방전기		■ 유도등, 유도표지의 설치상태(방향, 고정상태, 설치높이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296	4단계	전기·정보통신	피뢰설비		■ 수뢰부(돌침, 수평도체 등)은 피보호물이 보호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97	4단계	전기·정보통신	피뢰설비		■ 수평도체 및 인하도선의 규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298	4단계	전기·정보통신	피뢰설비		■ 피뢰설비의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접지도체, 접지단자함 등)	
299	4단계	전기·정보통신	주차관제시스템		■ 차량번호인식기 설치 및 동작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00	4단계	전기·정보통신	주차관제시스템		■ 차량차단기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연번	단계	분야	공종	자재	확인사항	확인결과
301	4단계	전기·정보통신	주차관제시스템		■ 출입통제서버 설치 및 동작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02	4단계	전기·정보통신	주차관제시스템		■ 센서(LOOP COIL 등) 설치상태 및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03	4단계	전기·정보통신	주차관제시스템		■ 광케이블 설치 등 배선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04	4단계	전기·정보통신	함 설치	전화약전단자함	■ 래핑 및 단자조임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05	4단계	전기·정보통신	함 설치	전화약전단자함	■ 선변장과 세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선, 예비선 바뀜 포함)	
306	4단계	전기·정보통신	함 설치	TV증폭기함	■ 증폭기함 내 회로분리 상태를 확인하고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07	4단계	전기·정보통신	함 설치	TV증폭기함	■ 천공부위는 밀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08	4단계	전기·정보통신	함 설치	세대단자함, 통합 관리반	■ 단자대 등 기기의 배치 및 결선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09	4단계	전기·정보통신	함 설치	세대단자함, 통합 관리반	■ 구내선로의 링크성능 시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0	4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구설치	인터폰, 비디오폰	■ 누화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흡음재 충전)	
311	4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구설치	인터폰, 비디오폰	■ 결로방지용 코킹처리를 하여야 한다.	
312	4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기설치	방송설비	■ 회로별 기능 분리상태 확인하여야 한다.	
313	4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기설치	방송설비	■ 비상 전원장치 기능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전 및 복전 시 비상 및 상용 절체여부, 축전지의 과충전 및 과방전 방지여부 등)	
314	4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기설치	방송설비	■ 화재시 연동 및 비상 방송 절체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15	4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기설치	방송설비	■ 단자함의 계통도 부착여부 및 회로명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16	4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기설치	TV공청안테나	■ 안테나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고정상태, 돌침 과의 이격거리 등)	
317	4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기설치	TV공청안테나	■ 안테나 전선관 말단부위는 웨더캡을 시공하고, 주위는 코킹 등으로 누수를 방지한다.	
318	4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기설치	TV공청안테나	■ 화면 조정상태(해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19	4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기설치	감시카메라	■ 카메라 (고정, 가동형)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20	4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기설치	감시카메라	■ 모니터 및 인터폰 데스크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관리사무소 내부(방재실 등) 바닥면에서 2,000mm 이상 높이 또는 1층 현관 인근 실내에 벽걸이형 또는 벽체 매립형)	
321	4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기설치	감시카메라	■ 화면 조정상태(화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22	4단계	전기·정보통신	기기설치	감시카메라	■ CCTV 녹화저장확인 장치에 개인정보보호용 S/W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영상감시 접속로그, 운영이력관리, 포렌식 기반 영상반출관리, 영상정보 제 공시 모자이크 처리 및 열람횟수 제공 기능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은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항으로, 상기와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 재시공, **사업참여제한**, 약정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시공자: (인)
 사업자: (인)